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한 중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슬람금융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김 영 서

이슬람금융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적 연구

김 한 종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법 학 과

김 영 서

인 준 서

김영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황태희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권오성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김한중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전 세계금융시장은 여러 번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전통금융에 대한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래구조를 가진 이슬람금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불어 오일머니를 자국의 자본시장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이슬람금융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이슬람금융이란 이슬람율법인 샤리아(Shari'ah)에 따른 금융거래이다. 이슬람금융은 샤리아에서 요구하고 있는 행동 기준인 와지브, 만두부, 마크루브, 무바브, 하람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된다. 샤리아에서는 이자의 개념인 리바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계약과 투기, 도박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거래행위가 근본 원인이었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이슬람금융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다. 일찍이 영국은 이슬람채권을 비롯한 각종 이슬람금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비이슬람국가 중에 이를 가장 활발하게 발전시켰고 비교적 이슬람문화와 친숙하지 않은 미국도 이슬람금융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민간기업이 앞장서서 이슬람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각종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슬람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25%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슬람인구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에 비하여 무슬림비율이 현저히 낮아 이슬람금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슬람채권의 종류인 이자라 수쿱과 무라바하 수쿱의 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을 비롯하여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행정, 경제, 종교 등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동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금융방식에 익숙한 우리경제는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게 포함되어있는 이슬람금융이 매우 낯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슬람금융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풍부한 오일머니를 유입시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현재 일부에 편중되어있는 투자패턴을 분산시켜 자본시장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므로 이슬람금융의 국내도입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슬람금융의 기본적인 구조와 특징, 주요 국가의 이슬람금융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제도 도입과 그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구축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향	3
제2장 이슬람법의 기본 이해	5
제1절 이슬람권의 의의	5
제2절 이슬람법의 주요 내용	7
I. 이슬람법의 정의	7
II. 이슬람법의 법원	7
1. 코란(Koran, Quran)	8
2. 순나(sunnah)	8
3. 이즈마(ijma)	9
4. 까야스(qiyas)	9
III. 이슬람법의 행동규범	9
IV. 이슬람법의 소송제도	10
V. 이슬람법의 형벌	11
제3장 이슬람금융의 주요 특징	13
제1절 이슬람금융의 역사	13

제2절 이슬람금융의 기본 원리	15
I. 서	15
II. 금지 행위	15
1. 리바(riba)의 금지	15
2. 가라르와 마이사르의 금지	17
3. 하람의 금지	18
III. 자카트(zakhat)	19
제3절 이슬람금융의 주요 거래형태	20
I. 서	20
II. 이슬람은행에서의 금융거래	21
1. 무라바하(murabahah)	21
2. 이스티스나(istisna'a)	22
3. 이자라(ijara)	24
4. 무다라바(mudarabah)	25
5. 무샤라카(musharaka)	26
III. 이슬람채권(Sukuk, 수쿱)	28
1. 서	28
2. 수쿱의 정의	28
3. 수쿱의 운용원리	29
4. 수쿱의 종류	29
(1) 무라바하 수쿱	30
(2) 이자라 수쿱	31
(3) 살람 수쿱	33
(4) 이스티스나 수쿱	34

(5) 무샤라카 수쿱	34
(6) 무다라바 수쿱	35
IV. 이슬람보험(Takaful, 타카풀)	35
1. 타카풀의 의의	35
2. 타카풀의 모델	37
제4장 주요 국가의 이슬람금융 현황 및 국제기구	38
제1절 주요 국가의 이슬람금융 현황	38
I. 서	38
II. 말레이시아	39
III. 바레인	42
IV. 아랍에미리트(UAE)	45
V. 인도네시아	47
VI. 영국	48
VII. 싱가포르	51
VIII. 일본	52
제2절 이슬람금융 국제기구	53
I. 서	53
II. 이슬람금융 서비스위원회(IFSB)	54
III. 국제 이슬람금융시장(IIFM)	55
IV. 이슬람금융기관 회계 및 감사기구(AAOIFI)	55
V. 국제 이슬람 평가기관(IIRA)	55
VI. 이슬람은행 및 금융기관 일반 평의회(CIBAFI)	56
VII. 이슬람금융 교육 국제센터(INCEIF)	56

제5장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	58
제1절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 도입배경과 현황	58
I. 이슬람금융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58
1. 이슬람금융 도입의 배경	58
2. 이슬람금융 도입의 필요성	60
3. 이슬람금융 도입의 과정	61
II.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 현황	63
1. 서	63
2. 도입현황	64
제2절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	67
I. 서	67
II.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67
1. 이차라 수쿱	67
2. 무라바하 수쿱	69
3. 소결	70
III. 이슬람채권의 조세법적 문제	71
1. 서	71
2. 외화표시채권 해당여부	72
(1) 서	72
(2) 수쿱과 회사채의 차이점	72
(3) 수쿱과 회사채의 유사점	73
(4) 소결	74
3. 취·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	74

(1) 서	74
(2) 소유권 이원화방식과 이슬람채권의 취·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	76
4. 자산유동화증권과 이슬람채권	77
(1) 서	77
(2) 자산유동화제도	77
(3) 자산유동화증권과 이자라 수쿱	79
(4) 자산유동화증권과 과세혜택	81
1) 법인세	81
2) 부가가치세	81
3) 취득세와 등록세	82
(5) 자산유동화제도의 문제점	82
(6) 소결	84
제3절 이슬람채권의 조세문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85
I. 영국	85
II. 말레이시아	87
III. 프랑스	88
제4절 이슬람금융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육성	90
I. 서	90
II. 샤리아어드바이저와 샤리아위원회	91
III. HSBC Amanah사의 사례	92
IV. 소결	94
제6장 결론	95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이슬람권의 현황	5
표 2 근대 이슬람금융의 발전 과정	14
표 3 바레인 통화청의 이슬람은행 감시·감독 체제	43
표 4 UAE의 이슬람금융 관리·감독	46
표 5 전 세계 타카풀시장 현황	46
표 6 영국의 이슬람금융기관	49
표 7 정부의 이슬람금융 도입 추진과정	62
표 8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 현황	65
표 9 이슬람금융 교육기관	91

그림 목차

그림 1 전 세계 무슬림 분포 현황	6
그림 2 이슬람금융의 기본구조	20
그림 2-1 무라바하의 구조	22
그림 2-2 이스티스나의 구조	23
그림 2-3 이자라의 구조	24
그림 2-4 무다라바의 구조	26
그림 2-5 무샤라카의 구조	27
그림 3 수쿱의 기본구조	29
그림 3-1 상품별 수쿱의 종류	30
그림 3-2 무라바하 수쿱의 구조	31
그림 3-3 이자라 수쿱의 구조	32
그림 3-4 살람 수쿱의 구조	34
그림 4 주요국의 이슬람금융시장 및 대응수준	39
그림 4-1 수쿱시장의 각국 점유율	40
그림 4-2 바레인의 이슬람은행 총자산	43
그림 5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구조	7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최근 이슬람권은 2002년 이후에 고유가가 지속되고 미국달러의 약세 등으로 석유자본이 팽창하면서 오일머니 소비의 방향을 해외투자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금융시장에 오일머니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들의 취향에 맞는 금융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오일머니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이 보유하고 있다. 무슬림은 그들의 율법인 샤리아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다. 이슬람사회는 경제와 도덕의 구분없이 모두 샤리아를 통해 해석되고 지켜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국가들이 이슬람율법에 기초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면서 이슬람금융의 핵심인 이슬람채권(수쿱)의 발행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비이슬람국가에도 이슬람전업은행이 설립되거나 전통은행 내에 이슬람금융창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오로지 오일머니를 끌어들이기 위한 행동이 이슬람금융을 발전시킨 것만은 아니다. 2008년 금융위기 쇼크로 인해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무너지면서 글로벌경제가 휘청이게 되었다.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 일부국가의 경제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금융위기로 전통금융방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보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금융기관들의 비도덕적인 운영방식과 리스크가 높아도 단기적인 수익성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금융상품 판매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샤리아에서는 이자를 불로소득이라고 여기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확실한 것에 투자를 금지하고 실물거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투기나 도박성이 있는 사업은 해서도

안되고 관련사업자와 거래를 하여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금융거래에도 이러한 도덕적인 기준이 의무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주요 국가들이 이슬람금융도입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부 무슬림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슬람문화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또한 이슬람금융이 이슬람교도에게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라고 오해하고 있기도 하다. 이슬람금융은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 다만 이슬람을법인 샤리아에서 허락된 금융거래만을 제공할 뿐이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직원들이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원들은 무슬림 해당여부에 상관없이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슬람금융이 가장 발달한 말레이시아와 바레인, 영국 등은 일찍이 법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이슬람금융을 성장시켰다. 일본의 경우 이들보다는 뒤처지지만 민간기업이 앞장서서 이슬람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방법을 모색하고 시도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이 낮고 거부감이 있어 이슬람금융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유연성이 부족한 대륙법체계의 특성상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발생하는 관련법제의 정비나 개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다. 2009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슬람금융 서비스위원회(IFSB)와 공동으로 ‘이슬람금융 한국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이슬람채권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이슬람금융의 도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이슬람금융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본 논문

에서는 이슬람법의 기본구조와 이슬람금융제도의 특징을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제도 도입의 법제도 구축방안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향

우리나라는 이슬람금융제도 도입을 위하여 정부주도로 법제적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서 2009년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후 정부부처 연구기관과 은행, 증권, 보험관련 금융기관의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이슬람금융학회나 연구모임 등을 만들어 이슬람금융에 관한 연구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2012년 5월 기준으로 ‘이슬람금융’과 관련한 학위논문은 총 31개이며 경제학과, 아랍지역학과, 국제경영학과, 세무학과, 무역학과 등에서 논문이 존재한다. 이들은 주로 이슬람금융을 도입할 경우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기술하거나 이슬람금융의 거래구조를 기술하고 있다. 법학영역에서는 2010년에 이슬람금융에 대한 논문이 발간되었다.¹⁾ 이 논문에서는 이슬람금융의 기본적인 계약구조와 유형을 소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학영역에서 이슬람금융의 기본적인 구조와 특징, 이슬람금융제도를 도입한 주요 국가의 사례,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 도입현황과 이에 대해 논의한 연구논문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법제적 관점에서 이슬람금융제도의 도입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이슬람금융은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이들의 뿌리인 샤리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2장에서는 이슬람법의 의의와 법원을 비롯한 이슬람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주요내용을 기술한다.

1) 정유선, 「이슬람금융의 법구조와 유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제3장에서는 전통금융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하는 이슬람금융제도의 기본원리부터 금융형태에 대하여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이슬람금융 주요국인 말레이시아, 바레인, UAE, 인도네시아, 영국, 싱가포르의 이슬람금융현황과 이슬람금융의 발전을 위해 설치된 대표적인 국제기구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과 민간기업의 이슬람금융 도입현황에 대해 기술한다. 또한 이슬람금융 도입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법적 문제발생의 근본원인과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이슬람금융의 활발한 도입을 위한 법제도구축방안을 고찰한다. 이어 이슬람금융을 도입한 주요국가 중 영국, 말레이시아, 프랑스의 조세문제 해결사례를 기술하고 검토한다. 또한 조세법적 문제 외에 이슬람금융의 발전을 위한 이슬람금융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논의점들을 요약하여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도입의 현황과 그 대응을 위한 해결방안을 강조한다.

제2장 이슬람법의 기본 이해

제1절 이슬람권의 의의

일반적으로 이슬람권이라 하면 중동지역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이슬람권이란 기본적으로 이슬람국가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최근 넓은 의미로 이슬람교도를 뜻하는 무슬림이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까지도 이슬람권으로 포함되고 있다. 현재 이슬람권으로 이해되는 나라들은 아래의 표1과 같이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이다.

<표 1> 이슬람권의 현황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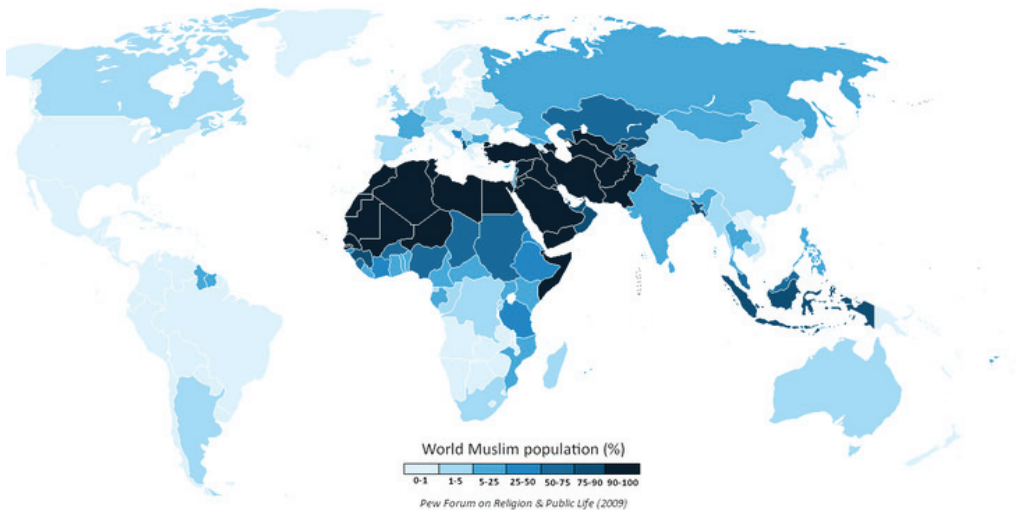
북아프리카	알제리, 이집트, 수단 등
서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바레인 등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남아시아	인도, 네팔,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이슬람국가들은 아래 그림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리적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슬람회의기구(OIC)에 등록된 회원국가 수만 해도 57개국에 달한다. 현재 무슬림의 수가 전 세계 인구의 25%를 넘어서서 15억명 정도로 집계되며³⁾ 이슬람의 주요종파인 수니파가 90%, 시아파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수니파는 무함마드⁴⁾가 말하고 행동한 것인 하디스⁵⁾

2) 미야자키 데즈야·김종원, 송창규 역, 「이슬람금융이 다가온다」, 도서출판 물푸레, 2008, 26면

3) Muslims celebrate holy month of Ramadan, <http://hosted.ap.org/interactives/2011/islam/>

를 생활관행이나 규범으로 보기 때문에 오로지 코란의 해석에 충실하다. 반면 시아파는 무함마드와 그 후계자들에 의한 코란의 해석을 신봉하며 이슬람의 신념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으로 알려져 있는 지하드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에 과격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양분된 것은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사후 후계자를 둘러싼 대립과정에서 분열되었다.⁶⁾ 이러한 종파의 분열은 이슬람국가의 내전을 일으키는 등 상호충돌로 인한 이슬람권의 불안요소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림 1> 전 세계 무슬림 분포 현황⁷⁾

-
- 4) 무함마드는 이슬람의 교조인 예언자로서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아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기록한 자이다.
 - 5) 하디스란 무함마드가 살아생전 무슬림으로서 해야 할 행동에 대한 가르침이나 자신의 행동을 모아 기록한 언행록이다.
 - 6) 심의섭·김종도·김중관·이경희·홍성민, 「중동경제와 이슬람 금융」, 세창출판사, 2010, 26면
 - 7) 위키디피아,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Muslim_population#List

제2절 이슬람법의 주요 내용

I. 이슬람법의 정의

이슬람법이란 샤리아(Shari'ah)라고 불리며 이는 '신의 법칙을 따르는 길'인 성법(聖法)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인간이 올바르게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인간은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명령이자 진리인 신의 계시에 따라서만 무조건 복종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지시한다. 샤리아는 이슬람교의 근간이 되는 사고방식으로 인간관계의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상세히 지시하고 규정한다. 즉 종교는 법과 같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을 어길시 처벌받는다. 이것이 샤리아만의 독특한 특징이며 종교와 경제가 구분되지 않고 '도덕과 경제의 혼합'이 강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사회에서는 윤리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강요받지 않는다. 윤리적 기준들은 당연히 지키면 좋은 것이며 어기거나 등한시할 경우에도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처벌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샤리아에 따르면 일상생활과 종교를 결코 분리시키지 않으므로 윤리적인 부분들을 어길시 처벌받을 수 있다. 즉 이슬람법에서 '법과 윤리'는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꾸란)과 동일시되며 이는 곧 신의 말씀을 이룬다. 입법자는 신이며 신은 인간이 올바르게 살게 하도록 법과 윤리를 주었고 인간은 이 모든 것에 복종하며 자비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있다.⁸⁾

8) 한동훈·이원삼·안수현, 「이슬람법이론 및 금융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면

II. 이슬람법의 법원

이슬람법, 즉 샤리아의 법원은 크게 코란(Koran, Quran), 순나(sunnah), 이즈마(ijma), 끼야스(qiyas)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코란(Koran, Quran)

코란은 순나와 더불어 일차적인 법원이며 그 중 코란은 가장 중요한 법원이다. 코란은 하나님께서 무함마드에게 진리를 계시한 것을 정리한 이슬람교의 성전이며 무슬림은 이것에 무조건 복종한다. 코란에 의해 생활규범이 정해지고 국가가 통치되는 점은 이슬람문화의 시작이며 끝이다. 코란의 대부분이 종교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부분은 극히 일부이다. 코란은 성립 이후 한 단어의 변경도 허용되지 않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해설만 가능하다. 원래 번역 또한 금지되어 있었으나 12세기 이후 각국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다.⁹⁾

2. 순나(sunnah)

순나는 무슬림의 행동기준에 관한 지침이며 무함마드가 하디스를 통해 전달한 생활관행이나 규범으로서 이슬람사회에서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을 이른다. 즉 예언자의 가르침과 그 업적을 집대성한 것으로 코란에 비해 상세하게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¹⁰⁾ 시간이 지나면서 순나는 코란을 보충해주는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

9) 윤용주, 임병필, 「아랍 그리고 이슬람」, 도서출판 창문, 2006, 26~27면

10) 홍성민, 「이슬람 경제와 금융」,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09, 103면

다.¹¹⁾

3. 이즈마(ijma)

이즈마는 코란과 하디스에 의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주는 세 번째 법원이다. 이슬람에서는 알라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종교학자를 ‘울라마’라 부른다. 이들은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자문할 수 있으며 이즈마를 이용하여 각종 문제들을 해결한다.¹²⁾ 울라마의 결정은 코란이나 순나보다 하위에 있는 법원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높은 권위를 가진다.¹³⁾

4. 끼야스(qiyas)

코란이나 하디스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코란과 하디스에 유추하여 판정을 내리는 방법을 끼야스라고 한다. 이는 상급법원에 의해 결정된 새로운 판례나 판례법을 뜻한다.

Ⅲ. 이슬람법의 행동규범

샤리아에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기준이 있는데 와지브, 만두브, 마크루브, 하람, 무바브로 구분된다. 첫째, 와지브(wajib)는 신이 명령한

11) 손태우, 「CISG 제78조의 이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아랍 이슬람법(샤리아)의 법적 적용」, 상사판례연구 제20집 제3권, 2007.09, 524면, 이준호, 「이슬람금융의법적구조」, 아시아법제연구 제9호, 2008.10, 232면에서 재인용

12) 홍성민, 앞의 책, 104면 ; 이준호, 앞의 논문, 233면

13) 명순구, 「이슬람의 이해」, <http://www.mindle.net/bbs/data/data01/article042.pdf>, 5면

대로 행동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해 게으름을 피우거나 어길시 벌을 받는다. 1일 5회 기도를 올리거나 봉사를 하며 한 달 동안의 금식을 행하는 라마단 기간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메카로 순례를 떠나는 것과 같은 의무행위이다.¹⁴⁾ 둘째, 만두브(mandub)는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행위로 1일 5회를 초과한 예배나 코란을 소리 내어 외우는 것과 같은 장려행위이다.¹⁵⁾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신이 권장하는 행위이다. 셋째, 마크루브(makrub)는 신이 싫어하는 혐오행위로서 하지 않으면 좋으나 처벌은 받지 않는 것으로 흡연이나 이혼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넷째, 하람(haram)은 신이 금지한 행위로서 이를 행할시 처벌을 받는다. 무슬림은 하람에 해당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 이자를 받거나 음주를 하는 행위, 돼지고기를 섭취하거나 살인, 강도, 간음, 도박, 우상숭배 등이 있다. 하람은 가장 강력하게 제재를 받고 엄격하게 해석된다. 돼지고기를 금하는 이유는 코란에 직접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지정학적으로 더운 기후인 탓에 부패하기가 쉽고 기생충이 많은 돼지고기를 잘못 섭취하면 건강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¹⁶⁾ 많은 이들이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금하는 문화를 혼동하는데 쇠고기를 금하는 종교는 힌두교이다. 다섯째, 무바브(mubah)는 처벌도 없고 장려도 없는 행위로서 위의 네 가지 행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행위이다. 즉 무바브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허용행위 또는 무관심을 의미한다. 이를 이행했다고 하여 특별히 상을 받지도 않는다.

14) 버나드루이스, 김호동 역, 「이슬람 1400년」, 까치글방, 2001, 39면

15) 미야자키 데즈야·김종원, 앞의 책, 49면

16) 미야자키 데즈야·김종원, 앞의 책, 61면

IV. 이슬람법의 소송제도

이슬람법은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임명하는 법관인 까디(qadi)에 의해 적용된다. 까디는 자신이 속한 학파의 규정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하는데 가장 먼저 입증책임에 대해 결정을 한다. 이후 까디는 정해져있는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기만 한다. 샤리아에는 법정의 계급조직과 상소제도가 없다. 이러한 샤리아법정의 소송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져있음을 깨달은 이슬람국가들이 근래에 들어 새로운 법전을 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점차 샤리아법원이 축소되고 까디의 활동 또한 제한되고 있다.¹⁷⁾

V. 이슬람법의 형벌

이슬람법에서 형벌에 처해지는 이유를 보면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에 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또한 행해지는 처벌의 유형도 매우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대표로 ‘기사스형벌’을 살펴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가장 정직하게 실행하는 형벌로서 가해자를 피해자와 그 유족이 당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엄격하기로 소문난 함무라비 법전을 토대로 내려온 것이다.¹⁸⁾ 물론 무조건적으로 기사스형벌을 행하는 것은 아니고 유족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기사스형벌은 인권유린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인간이 그들만의 판단으로 다른 인간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이슬람법이고 결국 이슬람사회를 지탱하는 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보복형은 공개적으로 행해지는데 이

17) 홍성민, 앞의 책, 129면

18) 미야자키 데즈야·김종원, 앞의 책, 50면

는 시민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사전에 예방하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이슬람법의 형벌에 대해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명예살인’이다. 예를 들어 미혼의 여동생이 연애를 하거나 외간남자와 자동차 안에 같이 앉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하여 아버지나 오빠가 여동생을 살인하는 경우이다.²⁰⁾ 이란에서는 강간을 당한 10대 여성이 교수형이 처해지는 일도 있었으며 때로는 정조를 잃은 여인에게 명예살인을 하지 않을테니 스스로 자살하기를 가족들이 권유하기도 한다. 비무슬림의 시각으로 보면 이슬람법은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매우 엄격한 것이 사실이다. 샤리아에는 인간의 욕구를 많은 부분 제한하며 살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욕구를 강하게 제한한다. 이는 여성의 복장까지도 제한하여 여성들이 니카브, 차도르, 부르카 등과 같이 신체의 대부분을 가리는 히잡(hijab)을 착용하도록 한다.²¹⁾ 세계의 많은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히잡문화가 이슬람여성들을 억압하고 제한하므로 여성차별이라 하여²²⁾ 히잡퇴치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이슬람권의 여성들은 ‘히잡은 이슬람고유의 문화이며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는 도구’ 라고 주장하며 히잡문화를 옹호한다.

19) 심의섭·김종도·김중관·이경희·홍성민, 앞의 책, 34면

20) [세계의창]‘명예살인’ 가문의 영광 위해 유린되는 이슬람 딸들’, 경향신문, 2010. 08. 31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312132345&code=900305

21) 미야자키 테츠야·김중원, 앞의 책, 52면

22) ‘일부다처·여성할례 인권 유린 심각’, 국민일보, 2011. 05. 19일자,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973019&cp=nv>

제3장 이슬람금융의 주요 특징

이슬람금융이란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근거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 거래를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이슬람금융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1절 이슬람금융의 역사

신의 예언자인 무함마드 또한 무역상이었고 이슬람관련 각종문헌에서도 무역이나 상업활동의 지침 또는 역사에 대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슬람 금융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리바(riba)', 즉 이자에 대해서도 이슬람문화가 출현하기 이전에 아랍사회에서는 일상적인 관습이었으며 사람들은 상인들에게 7%에서 10%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리기도 하였다.²³⁾ 그러나 이슬람문명의 중심이었던 무역이 쇠퇴하면서 금융의 흐름이 유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후 이슬람문화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주석들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종교적인 독선이 활발해 지는 환경이 조성되었다.²⁴⁾

최초로 설립된 이슬람상업은행은 카이로에 지점을 낸 바클레이즈(barclays) 은행이다. 수에즈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생겨난 바클레이즈은행은 이자를 수수한다는 이유로 많은 이슬람법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후 리바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리바금지의 목소리가 더욱 짙어졌다. 1950년대에 들어서 이슬람법학자들이 이슬람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시작하였고 이시기에 파키스탄에서는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출현

23) 페트릭 숙테오, (사)에드보켓코리아 역, 「샤리아 금융의 이해」2009, 10면

24) 아키올(Akyol), 「사업에 대한 이슬람의 개념적 개방성」, 터키 데일리 뉴스, 페트릭 숙테오, 앞의 책, 12면에서 재인용

하였다.²⁵⁾ 이에 영향을 받아 1963년 이집트에 들어선 미트 가므르(mlit ghamr)저축은행은 샤리아에 따른 무이자은행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중동에 이슬람은행들이 연이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에는 파키스탄이나 이란 등이 자국의 모든 금융시스템을 이슬람금융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그 뒤 1990년대에 이슬람주가지수²⁶⁾가 개발 되는 등 다양한 상품의 출현과 함께 2000년 이후 이슬람채권시장이 발달하면서 아래의 표2에서와 같이 이슬람금융의 범위가 꾸준히 넓어지고 있다.²⁷⁾

<표 2> 근대 이슬람금융의 발전 과정²⁸⁾

1970년대	
지역	중동, 아프리카
상품	예금, 대출

↓

1980년대	
지역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상품	예금,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타카풀(이슬람보험상품)

↓

1990년대	
지역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상품	예금,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디케이트론, 타카풀, 리스, 주식거래

↓

2000년 이후	
지역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상품	예금,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디케이트론, 타카풀, 리스, 주식거래, 스쿠크, 투자펀드

25) 김종원, 「이슬람 금융의 힘」, 21세기북스, 2010, 31면

26) 이슬람주가지수(샤리아인덱스)란 이자수수나 무기, 술, 담배, 도박 등 샤리아에서 금지하는 것에 비켜 투자할 수 있도록 고안된 주가지수이다. 자산부채비율이 33%이상인 기업은 제외되고 수익에 대한 영업 외 금리수입의 비율이 5% 이상인 기업도 제외된다. 또한 총 자산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비율이 45% 이상인 기업도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원, 「이슬람금융의 활용방안 및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011.02, 44면

27) 누카야 히데키, 박미옥 역, 「이슬람금융」, 살림비즈, 2009, 34면

28) 김종원, 앞의 책, 33면 ; 누카야 히데키, 앞의 책, 36면

제2절 이슬람금융의 기본 원리

I. 서

이슬람금융은 샤리아에 부합되는 거래만 취급할 수 있다. 샤리아에서는 리바(riba)의 금지, 가라르(gharar)의 금지, 마이사르(maisir)의 금지, 하람(haram)을 금지하므로 이를 기준으로한 금융상품의 거래만이 허용된다. 또한 의무적으로 납세해야 하는 특별세 성격의 자카트(zakhat)를 통해 이슬람 금융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증진시킨다.

II. 금지 행위

1. 리바(riba)의 금지

샤리아에서 리바는 전통금융의 이자와 유사한 개념이다. 코란과 성경²⁹⁾에서는 이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코란에서는 리바를 수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리바의 의미에 대해 논쟁이 있다. 코란 2장 275절과 3장 130절에는³⁰⁾ 리바³¹⁾의 부도덕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이슬람 내에서도 리바를 고리대금으로 볼 것인지 그저 이익으로 볼 것인지

29) 구약에 보면 이자와 장리를 받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돈을 빌려 줄때에도 무이자과 무담보를 명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의 스콜라학파도 “화폐는 화폐를 만들지 않는다.”는 법칙을 이어왔고 교회법에서도 “시간은 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보아 시간가치에 의한 이자의 부여를 금하였다. 김종원, 앞의 책, 17면; 홍성민·김종원·홍순재·이선호, 「이슬람금융의 이해와 실무」, 한국금융연수원, 2010, 37면

30)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http://www.quran.or.kr/Korean%20Quran.pdf> 참조

31) 각주 30의 번역에서는 리바가 ‘고리업’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리바의 의미에 관한 논쟁을 소개하기 위해 원어 그대로 ‘리바’라고 표현하였다.

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 리바를 고리대금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³²⁾ 이자의 부정적 해석범위가 좁아져 전통금융과 어렵지 않게 동화될 수 있다. 그러나 리바를 단순이익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³³⁾ 전통금융과 개념자체가 충돌하므로 비이슬람권에서 이슬람금융을 도입하려면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렇듯 리바에 해석에 관한 논쟁은 있지만 대다수의 이슬람법학자들은 후자에 따라 모든 의미의 이자를 금지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³⁴⁾

전통금융에서 이자를 보는 시각과 이슬람경제논리로 이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차이가 있다. 이슬람에서는 금융을 상품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금융’이란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³⁵⁾ 그러므로 형태가 있는 확실한 물품거래가 아닌 추상적 성격의 금융에서 태생된 이자는 불로소득으로 본다. 이슬람에서 이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이자사업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이 부정적으로 탈취 당함을 보호한다. 둘째, 이자로 인한 기만과 사기가 불화를 조성하고 정당하고 생산적인 상행위를 해침을 보호한다. 셋째, 이자를 갈취하는 사람을 공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무슬림간에 분쟁요소가 됨을 방지한다. 넷째, 무이자로 거래함으로써 무슬림간에 친절과 호의를 베풀 수 있다. 다섯째, 옹지 못한 자본가들에 의한 부정적인 부의축적을 방지³⁶⁾하기 위해 이자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규정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샤리아를 준수하여 진정한 무슬림이 되는데 목적이 있

32) 리바를 고리대금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이슬람개념이 자리 잡기 전인 고대의 리바 개념을 주장한다. 이슬람에서도 사람들이 상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기도 했는데 당시 채무자들은 이를 갚지 못하면 이자가 배로 불어나는 바람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제한적이고 적정한 이자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패트릭 숙데오, 앞의 책, 25면

33) 모든 이자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자율이 적정하지 아닌지 불문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이슬람 방식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이는 종교의 믿음의 관한 문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종교와 경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다. 패트릭 숙데오, 앞의 책, 29면

34) 일부에서는 “높은 이자”, “자연 이자”, “확정적 이자를 포함한 이자 전반”으로 나누어 판단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확정적 이자를 포함한 이자 전반”해석하고 있다. 이준호, 앞의 논문, 238면

35) 심의섭·김종도·김중관·이경희·홍성민, 앞의 책, 198면

36) 심의섭·김종도·김중관·이경희·홍성민, 앞의 책, 201면

다.

이러한 이자를 금지하는 특징이 이슬람금융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의 금지’는 전통금융과 이슬람금융이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이고 핵심이다. 이자를 돈이 돈을 낳는 부당한 이익 또는 착취로 해석하며 이를 엄격하게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이슬람금융이 독특한 거래구조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이자금융서비스이므로 이자가 없는 대신 원금에 일정한 금액의 수익을 더하여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때에 수익은 외형적으로 실물을 동반한 거래의 결과로서 실제성격은 이자와 같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이자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이슬람금융을 도입한 국가나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이슬람금융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자의 개념에 대해 관대한 편인데 이를 두고 샤리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슬람법학자들 사이에서 이슬람금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가라르(gharar)와 마이사르(maisir)의 금지

샤리아에서 가라르는 불확실한 것을 의미하며 마이사르는 투기행위를 뜻한다. 샤리아에서는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재산만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재산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은 투기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금지한다. 하디스에서는 가라르에 대해 앞으로 잡힐 물고기나 태어날 가축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불확실한 거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거래당시에 상품이 반드시 존재하고 이를 인도 가능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코란에서는 도박이나 투기와 같은 마이사르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 대상 또한 넓게 해석하고 있다. 마이사르는 운수에 맡기는 승부를 의미³⁷⁾하므로 음주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코란에 의해 금지된다.³⁸⁾ 그러므로 파생금융상품의 종류인 선물³⁹⁾이나 옵션⁴⁰⁾과 같은 방식은 이슬람금융에서는 금지되며 전통금융에서의 보험⁴¹⁾도 불확실하고 우발적인 상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므로 이슬람금융에서는 금지된다.

3. 하람(haram)의 금지

이슬람법의 행동규정에서 보았듯이 하람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다. 이슬람금융에서는 샤리아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배제하면서 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와의 거래 또한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람 거래 시에 실물거래가 수반된다 할지라도 도박, 포르노, 담배, 주류, 돼지고기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과 거래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때문에 카지노나 슬롯머신, 복권 등의 사업이나 알코올 관련 사업, 돼지고기를 다루는 식육사업, 흡연과 관련한 사업, 포르노와 매춘에 관련된 사업들은 이슬람금융에서 모두 배제된다.⁴²⁾ 예를 들어 A기업이 샤리아를 위반하지 않는 의류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이슬람금융서비스를 받으려 하거나 무슬림이 소유

37) 홍성민, 앞의 책, 265면

38) 코란 5장 90절과 5장 91절에서 술과 도박은 현세와 내세를 크게 해치는 것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39) 선물이란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량의 특정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맺은 계약이다.

40) 옵션이란 주식, 채권 같은 특정 자산을 미래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와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이다.

41) 전통금융에서의 보험은 소액의 보험료로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성이 있다고 본다.

42) 남명수·곽용신, 「이슬람 금융의 발전사적 고찰과 우리의 대응전략」, 경영사학 제24집 제4호, 한국경영사학회, 2009.12, 134면 ; 미야자키 데즈야·김종원, 앞의 책, 114면

한 회사와 거래를 원한다. 그러나 해당 의류사업이 샤리아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A기업이 복권사업에 일부 연관되어 있거나 돼지고기가 들어간 식품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A기업 자체가 샤리아에 위반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경우 A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A기업은 이슬람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Ⅲ. 자카트(zakhat)

자카트는 이슬람경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며 봉사의 의미를 가진 일종의 특별세의 개념이다. 무슬림들은 의무적으로 수익의 2.5%를 납부해야 하고 이는 개인 총자산에 대해 매년 부과된다. 자카트는 여러 형태의 사회보험과 같은 특수목적의 의미로 사용되며 정부지출로는 사용할 수 없다.⁴³⁾ 자카트가 강제적인 성격을 가진 이유는 여유있는 자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이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카트는 개인이 소유한 모든 종류의 부에 적용되며 이슬람 거시경제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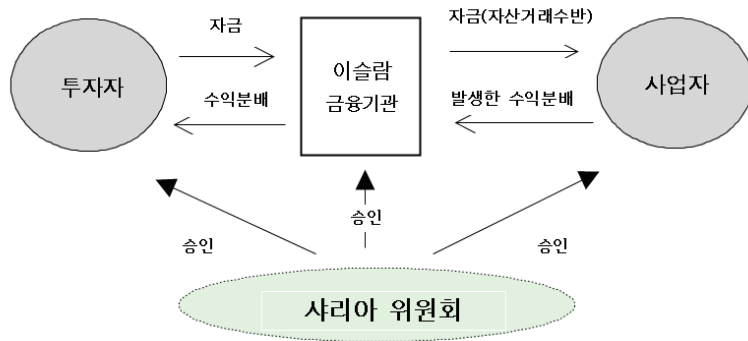
43) 홍성민·김종원·홍순재·이선호, 앞의 책, 32면

44) 홍성민, 앞의 책, 186면

제3절 이슬람금융의 주요 거래형태

I. 서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운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를 살펴보면 투자자가 사업자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슬람금융은 사업운영에 따라 투자자와 사업자가 손익을 분담하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사업운영의 성공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신 실물자산을 동반한 매매나 리스, 신탁이나 출자 등의 거래방식을 기초로 하여 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아래의 그림2와 같은 거래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2> 이슬람금융의 기본구조

이슬람금융기관이 투자자의 자금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사업자의 사업운영 손익을 미리 정한 비율에 의해 분배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사업자의 사업운영 성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해를 같이 분담한다. 이슬람금융에서는 금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거래나 투자의 수익을 통해 이익

을 배당받으므로 투자자와 사업운영자가 손익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렇듯 거래당사자 모두가 어느정도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 또한 이슬람금융의 특징이다.

II. 이슬람은행에서의 금융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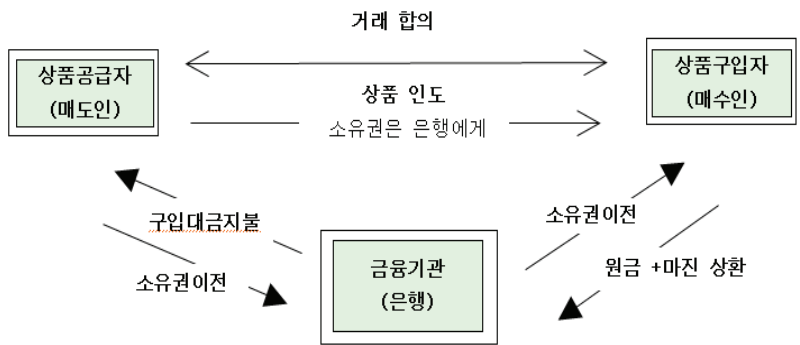
이슬람경제사회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간에는 기본적으로 연대의식이 형성되어있으며 이는 두 집단이 갈등관계가 아닌 공존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이것이 샤리아에 따라 금융거래를 하는 무슬림의 기본정신이다.⁴⁵⁾ 자본제공자와 사용자는 투자되는 사업의 위험을 분담하며 이는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의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기본원칙이다. 이슬람은행에서 주로 운영되는 금융거래형태는 무라바하, 이스티스나, 이자라, 무다라바, 무샤라카 방식으로 나뉜다.

1. 무라바하(murabahah)

무라바하는 소비자금융의 형태로서 전통금융에서의 소비자금융과는 구조가 다르다. 전통금융에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직접적으로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이다. 그러나 무라바하는 아래의 그림 2-1과 같이 금융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기계를 은행이 사전에 구입한 뒤에 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이를 금융수요자에게 매도하는 방식이다. 무라바하는 단기신용에 적합한 재판매계약으로서 은행이 고객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할증금을 가산해 해당고객에게 다시

45) 심의섭·김종도·김중관·이경희·홍성민, 앞의 책, 204면

판매하기도 한다.⁴⁶⁾ 무라바하는 금융거래 시점에 구입 대상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이 수수하는 마진은 시간의 가치에 따른 이자가 아니라 거래금액에 의해 산정되므로 샤리아에 위반되지 않는다. 무라바하는 현재 이슬람은행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거래방식으로서 이슬람금융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구입이나 법인의 기계구입, 원재료구입 등에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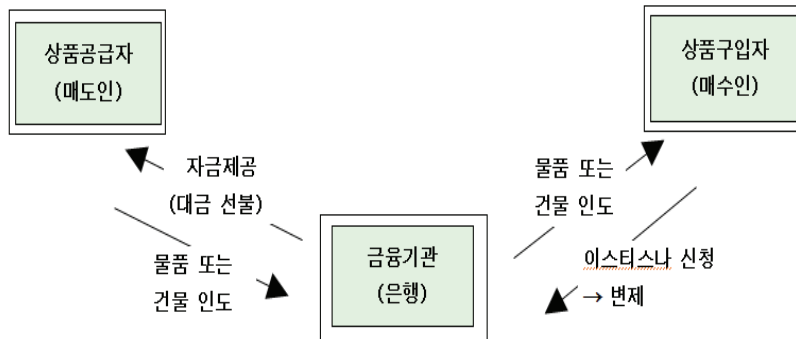
<그림 2-1> 무라바하의 구조

2. 이스티스나(istisna'a)

이스티스나는 생산금융의 형태로서 주문생산에 따른 주문위탁제조방식이다. 기본원리는 무라바하와 동일하지만 거래대상이 미래에 생산될 상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로 공산품제작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건설프로젝트에서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거래구조는 아래의 그림2-2와 같다. 건설프로젝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은행이 고객을 대신하여 제품이나

46) 김중관, 「이슬람 경제 이론과 현실적 적용」, 한국중동학논의 제21-1호, 한국중동학회, 2000, 218면

건설사양에 관한 구체적인 주문사항이 명시된 계약서를 근거로 건설업자에게 선지급을 하는 구조이다.⁴⁷⁾ 해당 계약상의 건물은 미래에 생산될 물품이므로 샤리아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물건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금융방식 중의 고용계약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문된 물품이 생산 또는 건설되게 될 경우 은행은 사람을 파견하여 이를 관리·감독하게 한다. 대금은 완불, 할부 또는 공정도에 따라 지불하는 등 모든 형태로 가능하며 대금지불이 유연한 점이 이스티스나의 가장 큰 특징이다.⁴⁸⁾ 최근 중동국가들은 이스티스나계약을 건설단계에서 이용하고 리스형태인 이자라계약으로 운영을 하는 복합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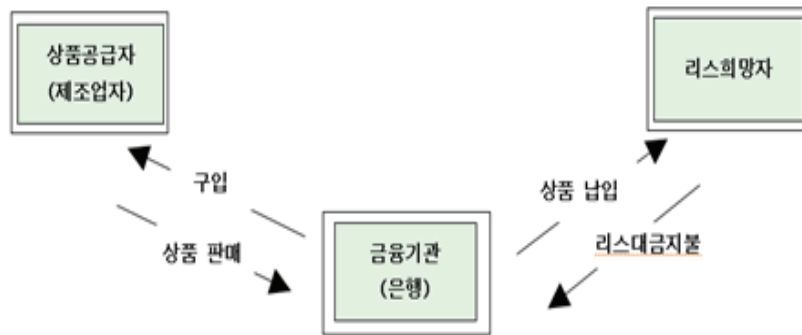
<그림 2-2> 이스티스나의 구조

47) 남명수·곽용신, 앞의 논문, 136면

48) 최두열, 「이슬람채권의 구조」,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8-1집, 한국이슬람학회, 2008, 311면

3. 이자라(ijara)

이자라는 전통금융에서의 리스금융거래와 유사한 개념이다. 기계나 설비, 건물처럼 큰 금융거래가 필요한 경우에 은행이 이를 구입하여 사용권만을 수요자에게 이전하고 은행은 이 리스기간 동안 사용료⁴⁹⁾를 정기적으로 받는 거래형식으로⁵⁰⁾ 아래 그림2-3과 같은 구조이다. 이후 만기가 되면 수요자는 해당 자산을 은행에 반환한다. 샤리아에서는 실체가 있는 자산을 고정된 금액으로 임대하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용료를 지정할 수 있다. 만기 후에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이전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래형태를 ‘이자라 와 이쿠티나’라 부르며 주로 주택대출에 사용된다. 무라바하는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지만 이자라는 장기 자금조달 형태이며 용차기간은 짧게 5년에서 길게는 15년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⁵¹⁾



<그림 2-3> 이자라의 구조

49) 리스료는 렌탈료, 자산가치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과 감각상각비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변동 또는 고정 형태로 유연하다.

50) 미야자키 데즈야·김중원, 앞의 책, 21면

51) 한정환,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이슬람 금융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8면

4. 무다라바(mudarab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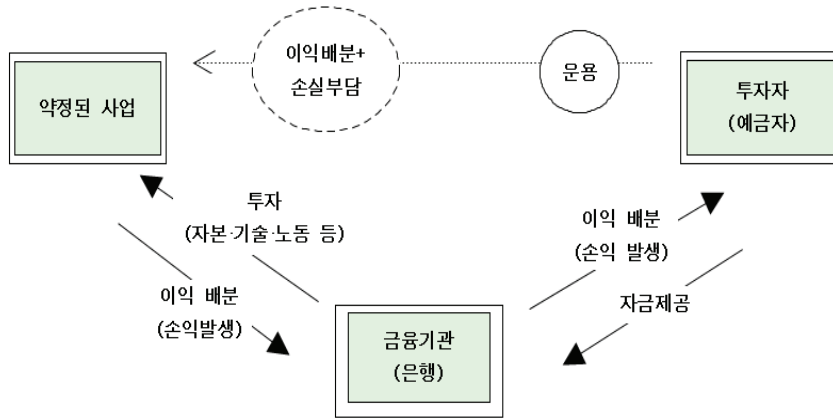
무다라바란 전형적인 이슬람은행의 금융형태로서 전통금융의 신탁금융과 유사하며 이슬람국가에서 기업이 자금을 필요로 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무다라바 거래시 은행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수탁한 자금을 운영한다. 아래의 그림2-4와 같이 투자자가 은행에 자금을 예탁하면 은행은 사업자의 사업운동을 위하여 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정한 비율로 배분하게 된다. 무다라바의 이러한 구조는 신탁금융(trust-financing)의 거래형태로 이해된다. 여기서 은행은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역할만 할뿐이며 손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출자자가 부담하게 된다.⁵²⁾ 수익이 발생하면 배분을 하는데 이때의 수익이란 은행이 제공한 자금에 대한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해 지원받지 않았던 과거의 투자에 대한 수익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⁵³⁾. 무다라바 거래의 투자자들은 다수의 사업에 분산투자하지만 경영참가권은 없는 형태로서 전통금융에서의 뮤추얼펀드⁵⁴⁾와 유사한 형태이다. 무다라바 거래시 은행이 자금을 활용할 기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선택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익여부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은행은 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고 기업의 과거 영업실적을 신중히 검토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기업들은 무다라바 거래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⁵⁵⁾

52) 다만 손해 발생시 사업자의 과실이나 태만이 있었을 경우는 출자자는 손해부담에서 제외된다.

53) 김중관, 앞의 논문, 218면

54) 뮤추얼펀드란 투자자가 펀드에 출자를 해 주주가 되며 펀드는 하나의 독립된 회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수익증권에 비해 주주의 운영 참여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특징이 있으며 투명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5) 김중관, 앞의 논문, 2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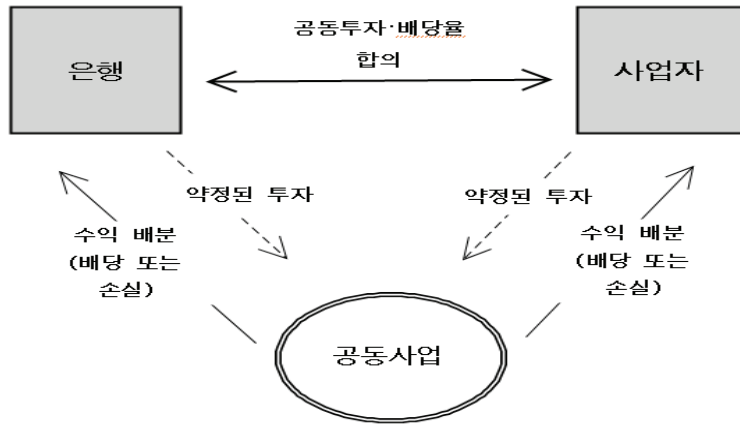
<그림 2-4> 무다라바의 구조

5. 무샤라카(musharaka)

무샤라카는 공동출자금융의 형태로서 아래의 그림2-5와 같이 은행과 사업자가 프로젝트에 공동출자하여 일정비율로 손익을 배분하는 구조이다. 은행은 출자한 비율에 따라서 해당사업에 대해 부분적인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사업운영 결과에 따라 발생한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까지도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은행이 공동출자자로서 사업경영에 관여하는 점이 무다라바와의 차이점이다. 무다라바에서는 사업자가 출자를 하지 않으므로 손해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무샤라카는 공동출자방식이므로 손실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전통금융에서의 PEF(private equity fund)⁵⁶⁾와 유사한 점이 많다. 무다라바가 단기사업에 주로 사용된다면 무샤라카는 장기사업에 이용

56) PEF란 사모투자펀드로써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의 펀드이다. PEF는 전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한 뒤에 ‘바이아웃(Buy Out)’의 투자전략을 취하며 실제운용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구분되는 형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활성화가 시작되면서 사모펀드운영이 늘고 있다.

된다. 수익배분을 하는 방식에 있어 사전에 합의가 있다면 자금뿐만 아니라 동산, 부동산, 기술 등의 현물출자 또한 가능하다.



<그림 2-5> 무샤라카의 구조

무다라바와 무샤라카의 경우에 수익의 유무가 해당사업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수익에 대한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 투자자(예금자)나 은행에게 손실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어 은행이 무다라바와 무샤라카거래를 이용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은행은 거래가 시작되기 이전에 해당사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사전조사와 신용도를 주의 깊게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계약이 체결된 무다라바와 무샤라카거래는 신뢰도와 수익이 어느정도 보장된 안정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전통금융이라면 손익에 대한 리스크를 금리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슬람금융에서는 은행에게 돌아오는 이익의 일부를 ‘투자리스크 저당금’으로 계산함으로써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다.

Ⅲ. 이슬람채권(Sukuk, 수쿱)

1. 서

이슬람채권은 수쿱이라고 불리며 이슬람금융의 핵심으로서 무라바하, 이스티스나, 이자라, 무다라바, 무샤라카 거래를 기본으로 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구조이다. 이슬람금융은 이슬람채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발전하였고 현재 이슬람채권은 세계 금융시장의 5대 자금원이 될 정도로 확대되었다. 본 장에서는 일반채권과 거래방식구조가 다른 이슬람채권의 종류와 특징을 논의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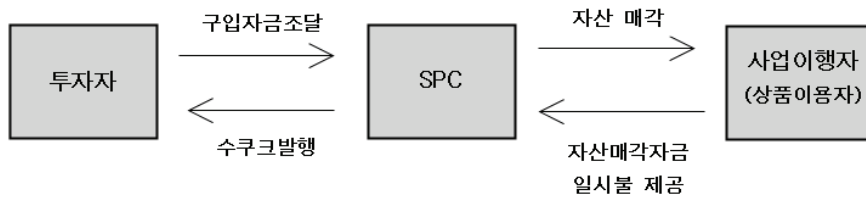
2. 수쿱의 정의

수쿱이란 금전적 권리를 표상하는 증서로서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를 준수하여 발행된 채권을 말한다. 전통금융에서 채권이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 형태를 갖춘 사적기업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이때 채권을 발행한 기관은 채무자이며 그 소유자는 채권자가 된다. 전통금융에서는 이자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샤리아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슬람금융에서는 일반채권의 금리를 실물거래를 통한 수익의 개념으로 대체하여 수쿱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쿱은 수익증권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만기가 끝날 때까지 돈을 환매할 수 없는 폐쇄형수익증권과 유사하다.⁵⁷⁾

57) 한정환, 앞의 논문, 43면

3. 수쿱의 운용원리

수쿱의 발행자는 주로 정부기관이나 거대기업이며 수쿱을 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V 또는 SPC)⁵⁸에 자산을 매도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자금을 사용한다. 수쿱의 최종기한에 사업이행자는 SPV로부터 설비 등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하고 이 자금은 수쿱의 상환원자금이 된다. 수쿱의 기본구조는 아래의 그림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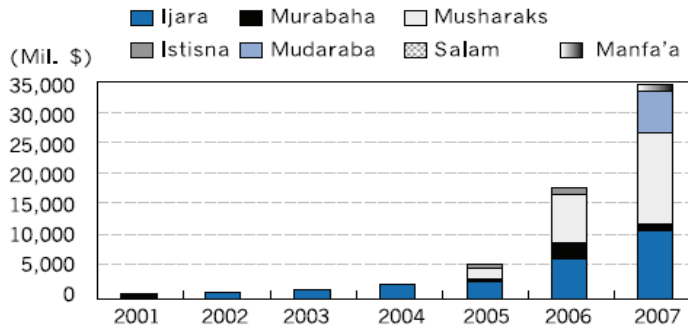


<그림 3> 수쿱의 기본구조

3. 수쿱의 종류

수쿱은 아래의 그림9와 같이 이슬람금융거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발행되며 주로 무라바하 수쿱, 이자라 수쿱, 살람 수쿱, 이스티스나 수쿱, 무샤라카 수쿱, 무다라바 수쿱이 통용된다.

58) 특수목적회사는 SPV(special purpose vehicle) 또는 SPC(special purpose cooperaton)이라고 하며 주로 SPV로 통용된다.



<그림 3-1> 상품별 수쿱의 종류⁵⁹⁾

(1) 무라바하 수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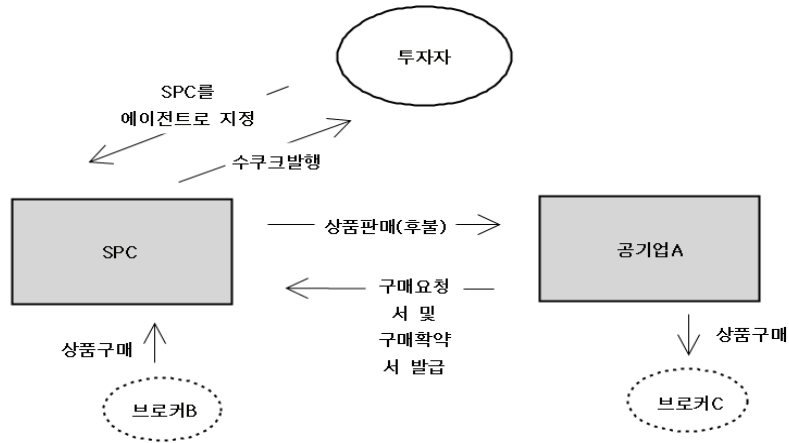
무라바하 수쿱은 미래에 발생할 실물자산의 매매이익을 유동화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으로서 주로 주택용자시 많이 통용된다. 그러나 샤리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일부 중동국가에서는 무라바하 수쿱을 이자처럼 고정된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보고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다.⁶⁰⁾ 반면 샤리아해석에 관대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무라바하 수쿱의 존재에 특별히 대해 문제 삼지 않고 활발하게 유통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무라바하 수쿱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말레이시아를 선호한다.

무라바하 수쿱은 아래의 그림3-2의 구조와 같다. 예를들어 공기업 A가 말레이시아에서 무라바하 수쿱을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우선A는 SPV를 해외에 설립하고 상품구매요청서와 구매확약서를 SPV에 전달한다. SPV는 브로커 B에게서 A사가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고 수쿱을 발행하여 현금을 조달한다. 이 자금은 브로커 B에게 지급된다. 이후 SPV는 B에게 구매한 상품

59) 박해식, 「이슬람채권시장의 현황과 전망」, 주간금융브리프, 17권 19호, 한국금융연구원(KIF), 2008.05, 9면

60) 홍성민·김종원·홍순재·이선호, 앞의 책, 189면

을 구매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A사에 매각하고 A사는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브로커C에게 다시 상품을 매각하여 현금을 조달한다. A사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SPV에 납부하고 SPV는 이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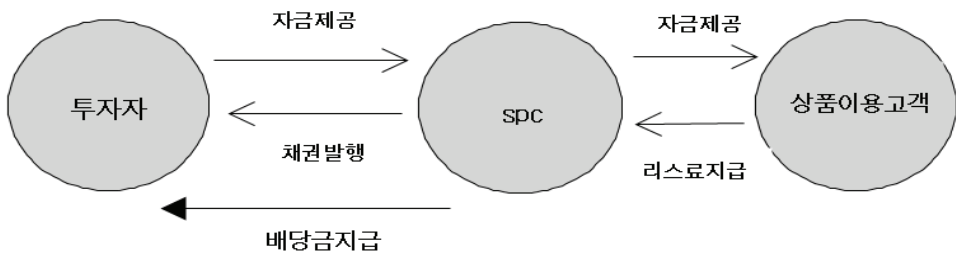


<그림 3-2> 무라바하 수쿱의 구조

(2) 이자라 수쿱

이자라 수쿱은 리스계약방식으로서 수쿱 중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다.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산매매 후 재임대’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샤리아의 해석강도에 따른 발행가능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이슬람국가 어디에서나 이자라 수쿱에 대하여 논란이 없어 거래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증권발행이 가능하다. 이자라 수쿱은 장기 인프라시설을 구축할 때 적합하다. 이자라 제공자가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수쿱을 매도하면 바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라 수쿱은 기계, 설비,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로 하여 아래의 그림3-3과 같은 구조로 채권을 발행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5년 이상의 장기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이자라 수쿱을 발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려한다. 우선 A기업은 해외에 SPV를 설립하여 해당 기초자산을 SPV에 매도한다. SPV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수쿱을 발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현금을 A기업에 전달한다. SPV는 해당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또는 리스료를 증권화시켜 투자자에게 발행하게 된다. A기업은 SPV와 임대·리스계약을 맺고 기초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정기적으로 임대료나 리스료를 SPV에 지급한다. 이때 A기업이 지급하는 임대료 등이 일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성격인 셈이다. SPV는 A기업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을 투자자들에게 수익이라는 명칭 하에 분배한다. 조달기업(A기업)은 원금과 이자를 분할납부하거나 원금은 채권 만기 시에 상환하고 이자만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채권이 만기되면 SPV는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A기업에 환원하면서 A기업으로부터 원금을 받아 이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 원금을 받은 투자자들은 채권을 SPV에 반환하게 된다.



<그림 3-3> 이자라 수쿱의 구조

이슬람채권 중에 이자라 수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토지, 각종 상품, 설비 등 활용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이자라 수쿱 거래시 조달기업이 납부하는 임대비용은 계약에 따라 고정, 변동 모두 가능하고 리스요율은 계약시 고정된다.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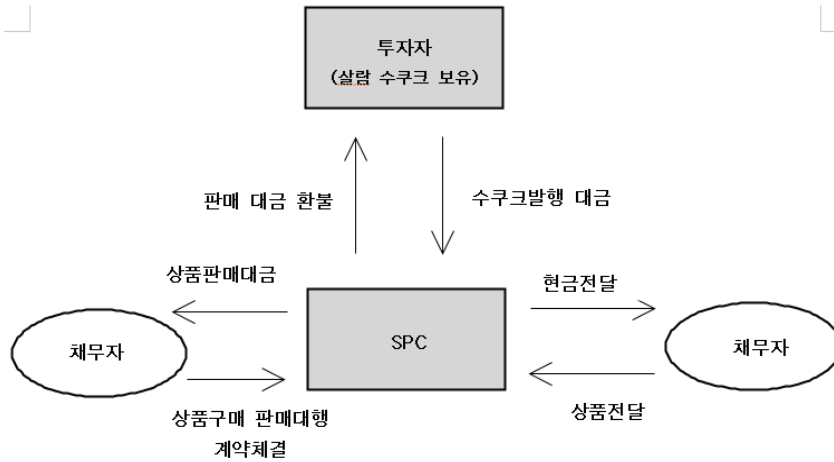
(3) 살람 수쿱

살람이란 정형적 상품을 미래의 일정시점에 인도하면서 전액을 현재에 선불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살람 수쿱은 이러한 살람 자본의 유동화를 위해 발행된 증서이다. 아래의 그림3-4와 같이 수쿱투자자가 살람 거래를 통해 인도받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그 자산의 매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수익의 형태로 배분받는 구조이다.⁶²⁾ 미래에 발생할 실물자산에 대한 이익을 유동화시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무라바하 수쿱과 동일한 구조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무라바하는 채무자에게 상품이 선이전되며 채무자가 지불할 상품가격이 포함된 이윤을 유동화시킨다. 그러나 살람 수쿱은 채무자에게 자본이 선지불되고 채무자에게 받은 상품을 투자자들이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윤을 유동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살람 수쿱의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의 매도가격도 결정할 수 있다.⁶³⁾

61) 서강석, 「이슬람 금융의 국내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2면

62) 최두열, 오규택, 박동규, 「이슬람 채권의 구조」, 한국이슬람학회논문총 제 18-1집, 2008, 317~318면

63) 서강석, 앞의 논문, 25면



<그림 3-4> 살람 수쿠키의 구조

(4) 이스티스나 수쿠키

이스티스나 수쿠키는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와 유사한 구조이다. 향후 제작되거나 건설될 물품에 대해 투자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자산의 판매를 통해 얻는 이익을 수익의 형태로 배분받는 방식이다.

(5) 무샤라카 수쿠키

무샤라카 수쿠키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본을 조달해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인데 수익은 투자자본 비율에 비례하게 된다.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손쉽게 발주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2개 이상의 참여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자본을 공여하고 미리 정해진 배분원칙으로 이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형태로서 이익배분율은 사전에 결정할 수 있다. 자본은 현금이나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하며 출자된 자본은 주주의 공동소유이다.

(6) 무다라바 수쿱

무다라바 수쿱은 자본가와 사업자가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서로에게 없는 부족한 점들을 수쿱을 통해 보완하기 위한 거래이다. 사업경영을 원하는 자금운용자가 사업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수쿱을 발행하게 되고 자본은 자본제공자에게서 모두 출자되어야 한다. 또한 경영은 경영자만 담당하기 때문에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어 있는 형식이다. 수쿱발행으로 인한 이익의 배분율도 사전에 정해야 한다.⁶⁴⁾

무샤라카 수쿱과 비교해보면 무다라바 방식은 자금출자가 자금제공자에게서 모두 행해지고 손실이 났을 경우에 이는 출자자에게 귀속된다. 하지만 무샤라카 방식은 사전합의에 의해 손실도 배분된다.

IV. 이슬람보험(Takaful, 타카풀)

1. 타카풀의 의의

이슬람보험이란 타카풀(Takaful)이라고 부르며 샤리아를 준수하여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카풀이란 아랍어로 상부상조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타카풀의 역사는 30년 정도 된다. 샤리아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무슬림의 의무라 명시하고 있다. 1985년 피크아카

64) 최두열, 오규택, 박동규, 앞의 논문, 324면

데미⁶⁵⁾에서 상호협조의 원칙과 샤리아를 준수하고 관대한 기부에 근거한 타카풀은 허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⁶⁶⁾. 타카풀의 보험형태는 패밀리타카풀이라 불리는 생명보험형태와 손해보험인 제너럴타카풀로 구분된다.⁶⁷⁾ 타카풀에서는 가입자를 ‘와카라’라고 칭하고 있다. 타카풀은 계약자펀드와 운영사가 주주펀드를 조성하여 계약자와 운영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보험계약자는 운영자가 관리하는 이슬람보험펀드의 소유자가 되고 이때 펀드투자는 무이자조건이다. 타카풀의 중개인은 자금운영자의 일부가 되고 이들의 수수료는 주주펀드로부터 지급되는 형식이다.⁶⁸⁾

전통금융에서의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소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이후 사고가 날 시에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이다. 이때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운용하면서 이자를 발생시킨다. 전통상업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고 발생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사고없이 계약이 만료된다면 지금까지 지급한 보험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어진다. 보험업자 또한 계약시 미래에 발생할 손해의 액수를 전혀 알 수 없다. 이러한 거래형태는 샤리아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자와 불확실성, 투기의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으므로 이슬람금융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방식이다. 즉 예상이 불확실한 사고에 대해 거래하므로 가라르에 해당하고 소액의 보험료로 거액의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투기행위로 인식된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자로부터 모은 자금운용을 통해 이자를 창출해 내며 인간의 생명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샤리아에 위법한다.

65) 피크아카데미는 샤리아 아카데미와 동일한 의미이다.

66) 김종원, 앞의 책, 23면

67) 미야자키 데즈야·김종원, 앞의 책, 145면

68) 홍성민·김종원·홍순재·이선호, 앞의 책, 135면

2. 타카풀의 모델

타카풀은 무다라바모델과 와카라모델로 구분된다. 무다라바모델은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통용되고 있는 보험형태이고 와카라모델은 그 외의 중동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보험방식이다. 무다라바모델의 경우 타카풀사업자도 보험료의 운용수익을 배분받는데 반해⁶⁹⁾ 와카라모델은 타카풀사업자가 소정의 수수료만 받으며 운용수익은 배분받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수익을 배분받는다. 와카라모델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수료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타카풀운영사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이유로 중동지역에서는 무다라바와 와카라모델을 혼합한 타카풀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혼합형타카풀은 보험영업을 함에 있어서는 와카라모델을 따르면서 투자운용에 대해서는 무다라바모델을 따르는 형식이다.⁷⁰⁾ 바레인중앙은행은 이러한 혼합모델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69) 배분비율은 사전에 합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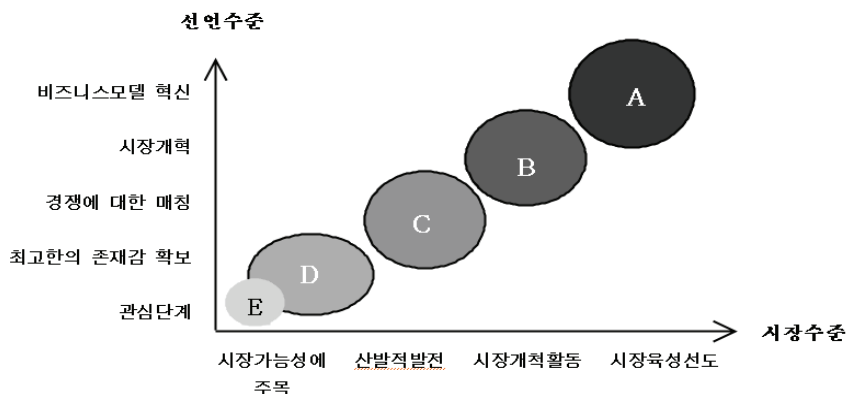
70)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보험연구원, 2009, 77~78면

제4장 주요 국가의 이슬람금융 현황 및 국제기구

제1절 주요 국가의 이슬람금융 현황

I. 서

이슬람금융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대략 70여국 이상이다. 1990년대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슬람금융은 그 내용이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샤리아의 해석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각국의 금융시장은 해당 정부의 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림4와 같이 이슬람국가들 중에 이슬람금융이 발달한 국가는 말레이시아, 바레인, UAE가 있으며 아직 발전단계인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국가⁷¹⁾, 북아프리카 제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이 있다. 비이슬람국가 중 영국, 싱가포르, 독일, 미국은 이슬람금융이 발달하였고 중국, 인도, 대만, 필리핀 등은 아직 발전단계이다.⁷²⁾



71) GCC란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라고 하며 GCC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A : 말레이시아, 바레인, UAE, 사우디아라비아
B: 영국, 인도네시아, 터키, 카타르 등
C: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
D: 일본, 중국, 인도, 홍콩 등
E: 한국

<그림 4> 주요국의 이슬람금융시장 및 대응수준⁷³⁾

이슬람금융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들은 말레이시아, 바레인, 인도네시아 등과 같이 전통금융과 이슬람금융을 모두 허용하는 이원적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수단과 이란처럼 오로지 이슬람금융만을 허용하는 단일시스템을 채택하는 국가로 구분된다.⁷⁴⁾

II.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동남아 최대의 관광국으로서 이슬람경제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이슬람금융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아래의 그림4-1과 같이 현재 유통되는 수쿱의 70%가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하고 있지만 다른 종교도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의 60%정도가 무슬림이며 불교신자가 20%, 힌두교신자가 6%, 기독교인이 9% 정도 차지한다.⁷⁵⁾ 말레이시아는 탁월한 지리적 조건⁷⁶⁾과 풍부한 자원, 현명한 정부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이 경제와 안정보장에 대한 협력을 하며 치안과 국방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해마다 각국을 돌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72) 이슬람금융연구회(일본), <제1장 이슬람금융의 개요>, 재단법인 국제금융정보센터, 2007.03. 9면, 김종원, 앞의 책, 162면에서 재인용

73) Kuwait Finance House, 국제협력은행, 2007, 남명수·곽용신, 앞의 논문, 150면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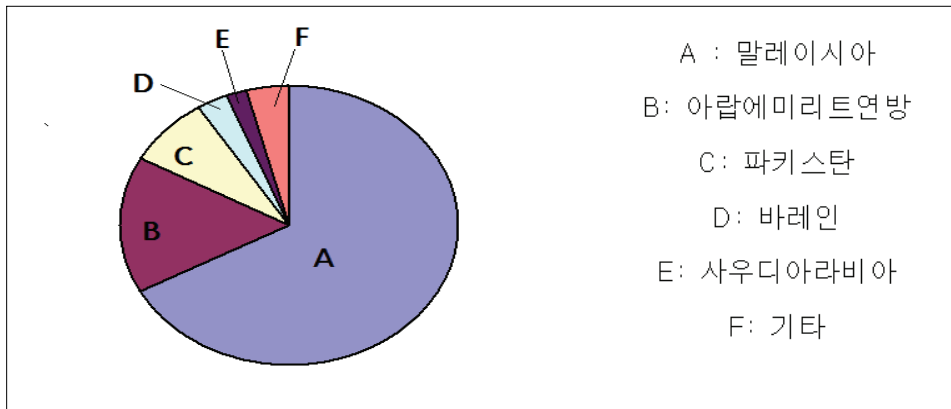
74) 홍성민·김종원·홍순재·이선호, 앞의 책, 65면

75) 김종원, 앞의 책, 184면

76) 말레이시아의 북쪽에는 중국, 인도, 베트남이 있고 남쪽에는 인도네시아가 위치한다. 이들은 모두 장

정책 등으로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8%가 넘으면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약 6%의 성장률을 보였다.⁷⁷⁾

또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회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OIC)의 회원국이며 OIC 3대 주요 기구 중의 하나인 이슬람정상회의(Islamic Summit Conferenc)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⁷⁸⁾



<그림 4-1> 수쿱시장의 각국 점유율⁷⁹⁾

이슬람금융은 전통금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샤리아의 해석에 비교적 관대한 말레이시아라 할지라도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에 제약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금융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이유는 이슬람채권인 수쿱을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으로

차 활발한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들 시장에 접근이 용이하여 투자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77) 박종현, 앞의 책, 49면

78) 심의섭, 「이슬람 금융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한국중동학회 제29권 3호, 2009, 61면

79) 블룸버그(Bloomberg), www.bloomberg.com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인프라구축을 수쿱을 발행하여 자금을 끌어들이었다. 또한 말레이시아 통화인 링깃으로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일반채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하였다.⁸⁰⁾ 이것이 말레이시아 링깃수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서비스는 원래 1969년 순례자 자금위원회가 메카 성지순회를 계획하는 이슬람교 신자의 저축예금을 유통하기 위함이었다.⁸¹⁾ 이후 1983년 말레이시아 이슬람은행(Bank Islam Malaysia Berhad)이라는 최초의 이슬람은행을 설립하고 수쿱과 타카풀 등을 발행하여 유통하였다. BIMB은 개인과 사회단체들이 이슬람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활발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또한 이슬람은행연구회를 설립하여 재정자문위원회와의 공동회담을 통해 국립조정위원회를 형성하는 단계를 밟았다. BIMB는 쿠알라룸푸르에 최초 지점을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하면서 50개 이상의 지점망을 확충하였다. BIMB 설립 이후로 말레이시아 내의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들도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금융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이로서 말레이시아는 전통은행과 이슬람은행이 모두 갖추어진 이원적 시스템을 채택한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⁸²⁾ 이러한 이중은행제도는 전통은행과 이슬람금융만을 취급하는 이슬람전업은행으로 나뉘어져 있거나 하나의 은행내부에 이자를 받는 여신사업부와 이슬람금융사업부가 구분되어 있는 구조이다.⁸³⁾ 2012년 2월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전업은행은 16개⁸⁴⁾이며 이슬람은행제도에

80) 미야자키 테츠야·김종원, 앞의 책, 142면

81) 심의섭, 앞의 논문, 59면

82) 정영규, 「이슬람경제의 이해- 이란의 경제정책과 말레이시아 산업정책」, 연경문화사, 2008, 180면

83) 이코노믹리뷰, 「[이슬람금융]세계는 유치경쟁 속도전 한국은 정쟁불모 지각생」, 2011. 02. 21일자, <http://er.asiae.co.kr/erview.htm?idxno=2011021710084028678>

84) 말레이시아의 이슬람전업은행은 Affin Islamic Bank Berhad, Al Rajhi Banking & Investment Corporation (Malaysia) Berhad, Alliance Islamic Bank Berhad, Amlslamic Bank Berhad, Asian Finance Bank Berhad, Bank Islam Malaysia Berhad, Bank Muamalat Malaysia

일부 참여하고 있는 은행은 15개이다.⁸⁵⁾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금융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06년 말레이시아 국제금융센터(Malaysia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MIFC)를 설립하였다. MIFC는 이슬람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부문에 전문가를 공급하여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슬람금융제도에 관한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금융에 대해 각종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역외 이슬람금융회사가 사업운동을 유연성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금융이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⁸⁶⁾

III. 바레인

바레인은 GCC국가들 중 가장 면적이 좁고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중동에서 이슬람금융의 중심지역할을 하고 있다. 바레인은 천연자원이 주변국들에 비해 가장 적기 때문에 일찍이 금융사업을 활성화시켜 이슬람금융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바레인은 지난 20년간 GCC지역의 금융센터 역할을 하며 역내의 자금을 끌어들이었다. 바레인은 다른 중동국가들에 비하여 이자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며⁸⁷⁾ GCC국가 중에 이슬람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법적인프라가 제대로 정비되어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바레인의 이슬람은행들이 전통은행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파이낸싱을 계획하는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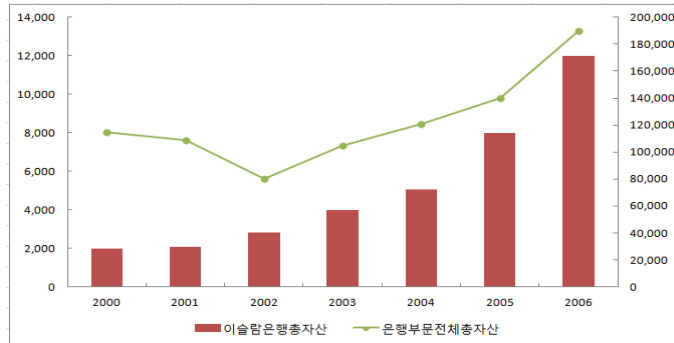
Berhad, CIMB Islamic Bank Berhad, Hong Leong Islamic Bank Berhad, HSBC Amanah Malaysia Berhad, Kuwait Finance House (Malaysia) Berhad, Maybank Islamic Berhad, OCBC Al-Amin Bank Berhad, Public Islamic Bank Berhad, RHB Islamic Bank Berhad, Standard Chartered Saadiq Berhad 이다. Bank Negara Malaysia, <http://www.bnm.gov.my>

85) 말레이시아 이슬람 국제 금융센터, <http://www.mifc.com>

86) 말레이시아 이슬람 국제 금융센터, <http://www.mifc.com>

87) 심의섭·김종도·김중관·이경희·홍성민, 앞의 책, 119면

적극적인 노력한 결과로 바레인의 이슬람은행 총자산은 아래의 그림4-2와 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원화 시스템을 채택하여 이슬람은행과 전통은행이 공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바레인에는 26개의 이슬람은행과 19개의 타카풀회사가 있다.⁸⁸⁾



<그림 4-2> 바레인의 이슬람은행 총자산⁸⁹⁾

바레인 통화청은 2000년에 이슬람은행에 대한 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중요 정보 및 규제방안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아래의 표3과 같이 이슬람은행의 유동성관리나 은행의 자기자본율, 손익결과 등을 감시·감독하고 있다.

<표 3> 바레인 통화청의 이슬람은행 감시·감독 체제⁹⁰⁾

자기자본율 규제	자본의 질	유동성
AAOIFI ⁹¹⁾ 에서 공표한 기준에 따라 이슬람은행들은 자기자본규제를 12%로 설정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여신은 중앙은행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15% 초과 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필요	6개월미만은 현금기준으로 6개월이상 5년 미만은 만기기준으로 나누어 자금 조달과 운영 불일치에 대한 점검

88) 바레인 중앙은행, http://www.cbb.gov.bh/page.php?p=islamic_finance, 2011. 08 기준

89) 바레인 중앙은행, <http://www.cbb.gov.bh>

90) 바레인 중앙은행, <http://www.cbb.gov.bh>

바레인중앙은행(CBB)은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바레인과 관련된 모든 금융 서비스를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2005년에 이슬람금융연구센터(Center for Islamic Finance Studies)를 설립하여 이슬람금융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바레인에는 국제이슬람등급기관(IIRA), 이슬람금융기관 회계감사기구(AAOIFI), 국제이슬람금융시장(IIFM), 유동성관리센터(LMC) 등의 이슬람금융과 관련한 중요한 기구들이 설립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실제 바레인은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이슬람금융의 거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수쿱시장이 세계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반면에 제2대 거점인 바레인의 수쿱점유율은 겨우 10% 남짓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슬람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적극적인 제도 정비와 인프라구축을 하면서 수쿱발행률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GCC국가는 평소 오일머니가 풍족했으므로 이슬람금융을 비롯한 자국의 금융시장개발에 대해 관심이 적었다. 이러한 이유로 수쿱을 발행하면서까지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말레이시아에 비해 수쿱발행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샤리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GCC국가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리바를 내제하고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바레인은 상대적으로 천연자원의 보유량이 적고 샤리아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GCC국가 중에서 일찍이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 바레인에서 내부갈등으로 인한 시위가 이어지면서 바레인으로 유입 될 자금이 유럽지역 등으로 유출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이어진 반정부시위가 근래에 들어 격렬해지면서 결국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하였다. 한때 바레인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거래를 하루정도 중단시

91) AAOIFI란 이슬람금융회사를 위한 회계감사기구이다.

킨 적이 있었을 정도로 현재 바레인의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바레인의 국가신용등급을 'BBB'로 두 단계 강등하기도 하였다.⁹²⁾ 바레인이 GCC내에서 이슬람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러한 내부갈등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GCC역외로 투자자금을 대거 유출시키는 상황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IV. 아랍에미리트(UAE)

UAE는 이슬람교도가 절대적으로 많은 국가로서 중동국가 중에 바레인과 더불어 이슬람금융이 비교적 발달한 국가이다. UAE는 가장 활발한 이슬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두바이 이슬람은행'의 거처이기도하다. UAE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과 부동산개발, 관광산업과 더불어 자유경제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였다. 금융영역에서도 정부의 자유경제정책에 따라 글로벌시장에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두바이나 아부다비에 이슬람금융기관을 꾸준히 설립하고 있다.⁹³⁾ 그 중 1975년 설립된 두바이 이슬람은행(Dubai Islamic Bank)은 현재 가장 오래된 이슬람전업은행이다. 두바이 정부가 30%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UAE에만 40여개에 달하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두바이 이슬람은행은 개인과 기업의 은행업무나 자산관리와 더불어 각종 금융기관이나 GCC국가가 수국

92) 존 스파키어나키스 방크사우디프란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바레인에 들어온 자금은 대개 장기자금"이라며 "만약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몇 달 정도 이어지면 이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바레인, 이슬람 금융허브 위상 흔들', 2011.03.17일자, http://www.ajnews.co.kr/view_v2.jsp?newsId=20110317000333 ; mk뉴스, '바레인 `중동 금융허브` 위상 휘청', 2011.03.17일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170172>

93) 한정환, 앞의 논문, 18면

과 전환사채가 포함된 회사채인수시장(Debt Capital Market)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있다.⁹⁴⁾

UAE는 이슬람은행제도와 전통은행제도를 모두 인정하는 이중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UAE중앙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이슬람금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85년에 이슬람은행과 각종 금융기관에 관한 연방법 제6호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아래의 표4와 같이 이슬람금융의 감독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표 4> UAE의 이슬람금융 관리·감독⁹⁵⁾

이슬람금융회사설립	이슬람금융회사 활동범위	이슬람금융회사 감독
이슬람은행과 금융기관 그리고 투자회사는 공공주식 회사 형태	이슬람은행은 은행업무, 무역, 금융, 투자업무 등의 모든 서비스를 취급	이슬람은행과 투자회사들이 이슬람법에 따라 활동하는지 감독하기 위한 이슬람법감독기구를 설치

GCC지역의 타카풀시장은 아래의 표5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UAE도 마찬가지이다. UAE의 타카풀시장의 규모는 6억 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 38억 달러, 말레이시아 11억 달러에 이어서 이슬람권에서 세 번째로 큰 타카풀시장을 형성하였다. 아직 UAE의 보험가입률이 낮은 것을 볼 때 장차 UAE의 타카풀시장의 성장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표 5> 전 세계 타카풀시장 현황⁹⁶⁾

구분	2009	2010	2011
GCC	4886	6380	8330
동남아시아	1480	1912	2471

94) 두바이이슬람은행, <http://www.alislami.ae>

95) 법제처, 「UAE(두바이) 외국인 투자법 및 금융 관련 법제 연구」, 2009. 02, 84면

아프리카	377	477	602
레반트지역	39	55	736
인도	193	357	661
total(십억달러)	6975	9148	11999

또한 UAE는 두바이국제금융센터(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DIFC)를 출범시켜 UAE중앙은행과는 별도로 UAE의 금융기구에 대한 모든 감독을 하고 있다. DIFC가 자국에 이슬람금융기관 유치를 위하여 인센티브⁹⁷⁾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 UAE내에 수많은 이슬람금융기관이 들어서게 되었고 2008년에는 UAE의 수쿱발행율이 수쿱시장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높은 성장을 보여주었다.

V.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5% 이상이 무슬림인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이다. 그러나 타이슬람국가에 비하여 정치와 종교사이에 유착관계가 깊지 않아 샤리아를 관대하게 해석하는 편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금융은 무슬림 비율에 비해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워낙 무슬림인구가 많아 장차 이슬람금융의 성장기대치는 높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은행과 전통은행 방식을 모두 취하는 이중 제도이며 별도로 이슬람은행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은행법에 이슬람은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시켰다.⁹⁸⁾ 2002년에는 인

96) 박정현, '지속 성장하는 UAE 이슬람 금융',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globalwindow.org

97) 여기서 인센티브란 UAE내의 금융기관이 100%의 외국자본으로 설립됨을 허용하며 이에 대한 소득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자본과 수익의 본국송금에 대해 제한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UAE연합국 법인단체의 광범위한 세금협정 네트워크를 제공하면서 투명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숙련된 전문가들을 두바이 주변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UAE에서 이슬람금융을 이용하는 것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IT와 교통에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며 윈스톱 비자, 노동허가증 발급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바이국제금융센터, <http://www.difc.ae>

98) 김종원, 앞의 책, 177면; 남명수·곽용신, 앞의 논문, 151면 ; 홍성민·김종원·홍순재·이선호, 앞의 책,

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인도네시아 이슬람금융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이슬람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였다⁹⁹⁾ 이후 2008년에 중앙은행이 이슬람금융의 발전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이슬람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계획안’¹⁰⁰⁾을 발간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이슬람금융에 대한 세금관련규정의 부재와 이슬람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문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이슬람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규정을 명시한 법안을 가속화 시키고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제도를 융통성 있게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회계기준을 표준화시켜 통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이슬람금융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전문적인 인재양성과 네트워크, 자본을 갖춘 뒤에 국내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슬람금융에 대해 홍보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슬람금융의 세계적인 성장추세와 발전모습을 제시한 홍보물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이슬람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관대하게 샤리아를 따르고 있고 자국 내의 이슬람교도 단체들이 정부의 이슬람금융 발전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제도적인 부분이 정리 되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금융이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VI. 영국

영국은 비이슬람국가 중에서 이슬람금융이 가장 발전한 나라이다. 영국정부는 이슬람교도의 비율이 꾸준히 성장하자 더 이상 이슬람금융의 개방을

75면

99) 남명수·곽용신, 앞의 논문, 151면

100) ‘Grand Strategy of Islamic Banking Market Developme’,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www.bi.go.id/

지체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 영국은 전통금융과 이슬람금융이 공존하는 이중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슬람금융에 대한 특별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¹⁰¹⁾ 영국정부는 관련제도를 정비하면서 우선적으로 이슬람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세제와 규제의 불이익을 제거하였다. 이슬람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부담 때문에 전통금융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2004년에는 구매대행방식인 무라바하거래와 리스형태인 이자라거래를 이용한 토지거래에서 발생하는 토지인지세 이중과세를 철폐하였다.¹⁰²⁾ 이후 2005년에 이슬람금융에 대해서도 세제중립책을 실시하고 수륙의 배당방식을 전통금융방식과 동일하게 취급하게 하였다. 2006년에는 브라운 수상이 이슬람금융에 대한 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영국이슬람은행(Islamic Bank of Britain, IBB)은 2002년 영국에 설립된 최초의 이슬람전업은행이다. 이는 무슬림거주민이 많은 버밍엄에 설립되었고 2004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영국에는 아래의 표6과 같이 총 5개의 이슬람전업은행이 있으며 IBB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매금융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¹⁰³⁾

101)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Islamic Finance in UK: Regulation and Challenges",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07

102) 개인이 무라바하로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 토지매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구입자는 은행과 그 토지에 대해 무라바하 계약을 맺는다. 이때 토지소유권은 일단 매각자에서 은행으로 인도되고 구입자가 은행에 상환을 완료하면 구입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때 토지매각자로부터 구입자에게 토지소유권이 양도되면서 두 가지 거래가 공존하게 되므로 각각 거래세가 따로 붙게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의 문제점 때문에 이를 1개의 거래로만 취급하게 하였다.

103) 홍성민·김종원·홍순재·이선호, 앞의 책, 71면

<표 6> 영국의 이슬람금융기관¹⁰⁴⁾

이슬람금융기관의 활동	이슬람금융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slamic Bank of Britain - European Islamic Investment Bank - Bank of London and Middle east - European Finance House - Gatehouse Finance House 	그 외 샤리아에 적합한 금융상품개발을 돕는 투자고문과 이슬람금융 교육기관 ¹⁰⁵⁾ 이 존재하고 있음
	이슬람창구존재	HSBC, Ahi United Bank United National Bank(중동계은행임)등 17개	
비이슬람금융기관의 이슬람금융 취급	HSBC, Citigroup, Deutsche Bank, BNP Paribas 등 대형은행들이 이슬람금융 취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소개하고 있음		

영국정부는 이슬람금융을 전통금융과 동일시하되 우선순위에는 두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영국에서 아무리 무슬림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오일머니의 유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비이슬람국가에서 전통금융보다 이슬람금융이 우선시되기는 어렵다. 영국 내에서 이슬람금융도입에 대해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진 이유도 영국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 때문이다.¹⁰⁶⁾ 영국정부가 관련제도를 정비하면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투자여건을 좋게 만들자 이슬람부호들이 영국으로 몰리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영국을 제2의 고향이라 부를 만큼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¹⁰⁷⁾ 또한 영국은 2012년 런던을

104) 김종원, 각주 26의 세미나자료, 36면

105) 런던시립대가 세계 최초로 이슬람금융 MBA 과정을 개설하였다

106) 다만 1990년대에 이파키스탄 은행이 거대 금융범죄를 저질렀었고 각종 과격 무슬림들의 테러로 인해 이슬람금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국 내에 이슬람교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슬람문화 자체에 이질감이 적어서 이슬람금융에 대해서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107) 김종원, 각주 26의 세미나자료, 36면

림픽 인프라구축을 위한 자금조달도 수쿱발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¹⁰⁸⁾ 한동안 영국금융시장이 여러 악재로 주춤하자 글로벌시장에서 뉴욕과 동북아시아가 금융거점으로 새롭게 떠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정부는 오일머니의 유입을 통해 런던금융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슬람금융발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VII.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이슬람교인이 전 국민의 15%정도이고 이슬람금융의 발달수준은 주요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금융발달 수준이 높고 정부가 이슬람금융의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나 세금제도 등을 완화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서 장차 이슬람금융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는 이슬람금융과 전통금융이 공존하는 이중제도이다. 싱가포르정부는 2005년에 요르단과 카타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싱가포르의 이슬람금융거점화 계획을 선언하였다.¹⁰⁹⁾ 이를 위해 영국과 동일하게 이슬람금융 거래 시에 발생하는 거래인지세와 이중과세를 폐지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다.

싱가포르의 이슬람금융서비스는 1998년 화교은행인 OCBC가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샤리아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OCBC는 2008년에 이슬람금융만을 담당하는 'OCBC알아민'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슬람금융상품을 통해 첫 해에 1700만 달러의 이익을 거둔 OCBC알아민은 2009년에는 30%, 2010년 3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¹¹⁰⁾ OCBC알아민의 '시드 압둘 아지즈' 최고경영자는 OCBC가 싱가포르

108) 한정환, 앞의 논문, 33면

109) 김종원, 각주 26의 세미나자료, 37면

에 이슬람금융을 처음으로 도입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OCBC알아민이 본격적인 이슬람자본의 유치에 나설 예정이며 정부의 관련법 개정과 전문인력양성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싱가포르의 최대 상업은행인 싱가포르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Singapore, DBS)은 GCC회원국들과 공동출자하여 싱가포르 최초의 이슬람전업은행인 아시아이슬람은행(Islamic Bank of Asia, IBA)을 2007년에 설립하였다.¹¹¹⁾ 이 은행은 중동의 부유층을 위한 프라이빗 बैं킹을 중심으로 하여 자산운용이나 수쿱을 통한 투자 등의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Ⅷ. 일본

일본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이슬람금융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미 이슬람금융과 관련하여 대규모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고 민간기업과 이슬람국가가 연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2005년 도쿄 기업품거래소와 바레인 통화청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일본 내에서 이슬람금융이 관심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6년 일본정부는 이슬람법학자를 기용하여 샤리아위원회를 설치한 뒤에 다음해 재무성 산하에 ‘이슬람금융연구회’를 설립하는 등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슬람금융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낮아서 일본정부가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 일본 내의 금융기관들이 이슬람금융에 관한 업무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기업들이 이슬람현지로

110) ‘[10년후의 성장엔진을 찾아라] 아시아 금융허브 굳히는 싱가포르’, 동아닷컴, 2011.01.26일자,
<http://news.donga.com/3/all/20110125/34378110/1>

111) 누카야 히데키, 앞의 책, 169면

나가 당국의 금융기관을 통한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도 한다. 미쓰비씨도쿄UFJ은행은 말레이시아 CIMB와 이슬람금융 관련업무를 제휴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이온크레디트서비스는 일본기업 최초로 수쿱을 발행하면서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에서 136억엔 규모의 이슬람식 기업어음과 MTN¹¹²⁾을 발행하였다. 이는 수쿱이 일반채권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함이 보여준 사례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이온크레디트의 사례 이후에 일본민간기업이 해외로 진출하여 이슬람자본을 간접적으로 조달하는 방식이 증가하였다. 노무라증권과 다이와증권, 흥은제일생명자산관리 회사도 샤리아에 적합한 일본주식펀드를 운용하고 있고 도쿄해상은 말레이시아의 금융서비스그룹과 협력하여 타카풀사업을 시작하였다.¹¹³⁾

이렇듯 일본에서 민간기업들이 앞장서서 이슬람금융을 통한 자본조달을 성공하였으므로 이러한 방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금융기관들이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여 이슬람자본을 유치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슬람금융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안개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관련제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2절 이슬람금융 국제기구

I. 서

이슬람금융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리·감

112) MTN(Medium Term Note)이란 중장기채권차입의 한도와 기간을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수시로 어음을 발행하는 중·장기자본조달의 한 방법이다.

113) 한국금융감독원, 2009. 1. 13 한국금융감독원과 IFSB 공동 주최 이슬람금융 세미나 자료

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슬람금융 국제기구들이 설치되어 샤리아의 해석과 금융상품감독 및 리스크관리를 비롯한 인프라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해당 기구들은 국가마다 샤리아해석의 기준이 상이한 점과 금융과 샤리아에 관한 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가의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샤리아해석의 통일과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이슬람금융 서비스위원회와 회계 및 감사기구, 교육기관 등이 설립되었다.

II. 이슬람금융 서비스위원회(IFSB)

이슬람금융 서비스위원회(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Board, IFSB)는 이슬람금융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기관이다. 2002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설립되었으며 전반적인 이슬람금융을 관리·감독하고 연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FSB는 각국의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그 외 금융기관과 주요 국제기구를 회원으로 하여 2011년 9월 기준으로 정회원(Full Member)이 29개사, 준회원이(Associate Member)23개사, 옵저버회원(Observer Member)이 139개사에 달하고 있다.¹¹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옵저버회원의 자격으로 가입되어있다. IFSB의 회원이 되면 이로부터 이슬람금융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자료 및 연수기회와 기술적 원조를 제공받을 수 있어 효과적으로 이슬람금융을 도입하고 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가 용이하다.¹¹⁵⁾ IFSB는 여러 국제금융기관들과의 협력으로 이슬람금융의 리스크관리와 시장규제 및 투명성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해 19개의 표준을 제정하여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¹¹⁶⁾

114) 이슬람금융 서비스위원회, <http://www.ifsb.org/membership.php>

115) 김종원, 각주 25의 책, 38면

116) 이슬람금융 서비스위원회, <http://www.ifsb.org/background.php>

Ⅲ. 국제 이슬람금융시장(IIFM)

국제 이슬람금융시장(International Islam Financial Market, IIFM)은 2001년 바레인에 설립된 비영리기구이다. 전 세계 이슬람은행과 금융기관들의 활발한 시장참여를 위하여 이슬람금융상품 개발과 구조의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¹¹⁷⁾ IIFM는 국제 자본시장협회와 제휴를 하여 이슬람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서류 및 표준화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다. 물론 IIFM에서 개발된 금융상품 또한 IIFM내의 샤리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상품화 될 수 있다.

Ⅳ. 이슬람금융기관 회계 및 감사기구(AAOIFI)

이슬람금융기관 회계 및 감사기구(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for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 AAOIFI)는 1991년 바레인에 설립되어 이슬람금융에 관한 회계와 감사기준의 제정을 담당하고 있다. AAOIFI의 가장 큰 역할은 금융회계표준과 샤리아표준의 제정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서 이슬람금융기관들이 반드시 이 기준에 따를 것을 의무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활용으로 AAOIFI가 제시한 기준이 점차 이슬람금융의 회계와 감사기준으로 정립되고 있다. 이 기준 또한 AAOIFI 내부의 샤리아위원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Ⅴ. 국제 이슬람 평가기관(IIRA)

국제이슬람 평가기관(International Islamic Rating Agency, IIRA)은 2002

117) 국제 이슬람금융시장, <http://www.iifm.net/default.asp?action=article&id=126>

년 바레인에 설립되어 금융기관의 이슬람금융상품이 샤리아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의무사항들의 실천여부를 독립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IIRA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슬람학자 19명으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를 설치하고 평가대상인 금융상품에 대해 샤리아품질등급 부여방법 등을 결정한다.

VI. 이슬람은행 및 금융기관 일반평의회(CIBAFI)

이슬람은행 및 금융기관 일반평의회(General Council for Islamic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CIBAFI)는 2001년 바레인에 설립되었으며 모든 이슬람금융기관들 간의 협조를 촉진하여 조화를 도모한다. CIBAFI는 이슬람금융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의 개념과 규칙을 발전시켜서 이슬람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VII. 이슬람금융 국제 교육센터(INCEIF)

이슬람금융 국제 교육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in Islamic Finance, INCEIF)는 2006년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설립하여 이슬람금융 실무자 및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INCEIF에서는 이슬람금융제도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보다 실무자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는 샤리아위원회 등의 내부 관리·감독기구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샤리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¹¹⁸⁾ 전

118) 누카야 히데키, 박미옥 역, 「이슬람금융」, 살림비즈, 2009, 120면

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INCEIF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이슬람금융에 대한 전문가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INCEIF에서 이슬람금융자격증(CIFP)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하는 과정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뉜다.¹¹⁹⁾ 우선 이슬람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기본교육을 받는다. 샤리아의 측면에서 비즈니스와 금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고 이슬람경제와 자본시장의 특징과 이슬람금융 거래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대해 교육받는다. 이후 이슬람금융을 활용한 자산관리·계획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이슬람금융 전문가 협회(ACIFP)에 준회원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음단계로 이슬람금융의 구체적인 특징과 이슬람금융기관에 대한 관리방식과 리스크관리 방법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면 ACIFP에 정회원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에 걸쳐 이론교육을 모두 마치고 나면 실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월 동안 이슬람금융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도록 한다. 이를 모두 통과하고 나면 정규 CIFP자격이 주어진다.

119) 이슬람금융 국제 교육센터, <http://www.inceif.org/cifp/cifp-course-structure>

제5장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

제1절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 도입배경과 현황

I. 이슬람금융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1. 이슬람금융 도입의 배경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전통금융방식의 리스크를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슬람금융은 샤리아에 따른 금융거래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투기적인 성격을 가진 거래는 금지되기 때문에 아시아 금융시장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헤지펀드의 설립¹²⁰⁾¹²¹⁾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2008년 금융위기 시에도 이슬람금융은 글로벌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수쿱발행이 잠시 감소했던 것 외에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세계 주요국가가 이슬람 국가의 풍부한 오일머니를 유입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이슬람금융이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 또한 2002년부터 고유가 지속으로 석유

120) 헤지펀드란 개인모집 투자신탁. 100명 미만의 투자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partnership)'을 결성한 뒤에 조세회피지역을 위장거점으로 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다. 헤지펀드는 파생금융상품을 교묘히 조합해 도박성이 큰 신종상품을 개발하여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비판을 받아왔다. 매일경제 경제용어 사전, <http://dic.mk.co.kr/cp/pop/desc.php>

121) 1994년 이후부터 아시아의 신흥국들이 무한한 상승잠재력을 가진 것처럼 인식되었고 이로 인해 투기 거품이 형성되었다. 이후 거품이 걷히면서 신흥국의 통화가치와 주식시장, 자산 가격이 폭락하였고 결국 아시아시장은 금융위기를 겪게 되었다. 당시에 대량의 공매도 방식을 취하던 헤지펀드가 아시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양윤석,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의 규제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12면

수출국들의 경상수지 흑자비율이 두 배 넘게 성장하면서¹²²⁾ 이들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시장에까지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오일머니가 활발히 유입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금융산업과 개발투자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 경제성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슬람채권의 과세문제를 다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오일머니를 우리 자본시장에 직접적으로 유입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로서는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산유국의 대형플랜트에 참여하여 간접적으로 오일머니를 끌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슬람권의 국가들은 석유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매장량도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세계원유·가스 생산량’의 대륙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동지역이 원유 30%, 가스 12%로 가장 많은 원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무슬림이 많은 아프리카지역 또한 원유 12%, 가스 6.5%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슬람권의 ‘원유와 가스 매장량’은 생산량보다 훨씬 풍부하여 중동지역이 원유 61%, 가스 41%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대륙의 경우 원유 11%, 가스 8%로 총 7개 대륙¹²³⁾ 중에 매장량이 세 번째로 많다.¹²⁴⁾

이렇듯 이슬람금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활발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고 일부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금융시장의 투자패턴을 분산시켜 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도덕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 국내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22) 안재상, 「국제석유자본의 팽창과 활용방안」, 주간금융브리프 제16권 27호, 한국금융연구원, 2007, 4면

123) 7개의 대륙이란 중동, 북미, 러시아,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말한다.

124) 「2012 스톡캡 업계지도」, 어바웃어북, 2012

2. 이슬람금융 도입의 필요성

이슬람금융이 도입될 경우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필요자금을 충분한 규모로 용이하게 조달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전통금융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슬람금융의 경우에는 기업신용과 사업성만을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¹²⁵⁾ 또한 이자를 금지 하는 이슬람금융거래에서 자금제공자는 해당사업의 손익을 함께 분담하는 입장이 된다. 이는 금융기관이 사업자들로부터 단순히 이자를 받기위해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풍부한 자금으로 안정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슬람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전통금융상품과 같이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는 형태가 아니므로 원금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이슬람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투자대상인 기업의 신용과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투자자들에게 해당사업과 사업주에 대해 신뢰가 높은 상품에만 투자하도록 하여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줄인다. 이로 인해 이슬람금융상품의 경우 해당사업의 신용과 신뢰가 높아 사업성공으로 인한 높은 수익의 분배가 가능하며 원금손실의 리스크가 낮다. 또한 실물거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이슬람금융의 특성상 각종 변수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하는 그 시점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원자재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투자를 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125) 남명수·곽용신, 앞의 논문, 147면

적이다. 이는 투자한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전통금융상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슬람금융은 대체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투자 성향을 보이므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¹²⁶⁾

이슬람금융자산은 2009년 기준으로 세계금융자산의 1%의 수준이다.¹²⁷⁾ 아직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무슬림인구와 당분간 고유가가 지속될 것을 예상한다면 이슬람국가들의 경제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로 인해 이슬람자본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역내투자에 한계를 느낀 무슬림들의 자본이 장차 다양한 이슬람금융상품이 거래될 수 있는 환경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석유·가스과 더불어 각종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절반이 이슬람권이라는 점은 장차 이슬람금융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이슬람금융 도입의 과정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이슬람금융 도입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아래의 표7과 같이 2009년에 이슬람금융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슬람금융업무를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거나 이슬람권의 금융기관들을 초청하여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26)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중동자금은 장기자금으로 가장 안정적인 자금이며 국제시장의 인식도 그러하다. 또한 장기자금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면 외환위기 시 자동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2011년 3월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주장하였다. 조세일보, ‘윤증현 “중동자금, 가장 안정적인 자금”’, 2011.03.03일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1/03/20110303111836.html>

127) 남명수·곽용신, 앞의 논문, 145면

<표 7> 정부의 이슬람금융 도입 추진과정

일 시	내 용
2009년 1월	-금융위·금감원이 공동으로 이슬람금융세미나 개최 -이슬람금융을 도입할 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문제 논의
3월	-민관합동으로 이슬람금융활성화 TF팀 발족 -수속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
5월	-제6차 IFSB주최로 이슬람금융 한국설명회 개최 -한국의 이슬람금융 도입현황과 과제, 한국경제 상황에 따른 이슬람금융 투자 방식 소개 -국내 금융회사들의 한국기업설명회 실시
9월	-기획재정부가 이슬람금융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1년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슬람채권 비과세법안 관련 공청회를 비공개로 개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09년 1월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슬람금융을 도입할 경우에 발생하는 각종 제도적 문제들에 대해 논의함을 시작으로 2009년 5월에 싱가포르에서 각국 금융회사 관계자 및 투자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이슬람금융 한국 설명회(Korea Showcase)’를 개최하였다. 이 설명회에는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바레인, 이집트 등 이슬람권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및 투자자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싱가포르와 홍콩, 일본 등 아시아에서 이슬람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국의 감독기관과 금융회사들이 참석하여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주최 측은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을 소개하고 한국신용시장에 대한 투자와 한국자본시장에서 이슬람금융의 투자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홍보가 이루어졌다.¹²⁸⁾

128) 금융감독원, ‘이슬람금융 한국설명회 결과’ 보도자료, 2009.05.06

II.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 현황

1. 서

위에서 살펴본 정부의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동개정안은 2009년 9월에 제출되었고 몇 차례 계류 끝에 2010년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했지만 또다시 계류되면서 정부와 일부기업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금융권에서는 이슬람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금융기관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었으며 몇몇 기업들은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조달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²⁹⁾ 동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조세위를 통과하였으나 위원장 직권으로 계류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순수채권이 아닌 이슬람채권과 관련하여 세금을 일괄면제하는 것은 지나치며 이를 통해 테러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¹³⁰⁾ 일부의 종교적 편향을 이유로 법안통과를 거부하였다. 우리나라에 이슬람금융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부터 위와 같은 반대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동개정안의 통과가 계속 지연된다면 국내외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한국정부의 이슬람금융 도입입장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미 일부 중동국가에서는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¹³¹⁾

129) '국내 기관의 이슬람채권 발행 요원 자금조달 하려던 기업들 타격 불가', 문화일보, 2010년 12월 23일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223010320241830030>

130) 이에 대해 나집 라작(Najib Razak·58) 말레이시아 총리는 수쿱법 도입과 관련한 국내 일부의 우려에 대해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슬람채권의 60% 이상을 발행하는 말레이시아에서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으므로 테러리스트들에게 수쿱 수익이 전달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1년 4월 7일자,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310471&cloc=olink|article|default

131) 김보영, 「또다시 지연된 한국의 이슬람금융 도입」, 자본시장 weekly 49호, 자본시장연구원, 2010, 2면

영국과 싱가포르 등은 수쿱을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보고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수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일반채권과 동등한 입장을 만들어 거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동개정안의 목적도 이와 같으며 이를 이유로 법안통과를 계속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금융시장에 이슬람금융의 도입이 늦어지면서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고 이는 결국 무슬림들의 거대자본이 거래하기 수월한 다른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2. 도입현황

국내 금융기관들은 증권업을 중심으로 일찍이 이슬람금융의 도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투자증권,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이슬람국가의 이슬람금융기관들과 제휴를 맺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이슬람금융팀을 조직하고 2008년에는 이슬람금융전문가를 영입하여 수쿱발행 준비를 하였다.¹³²⁾ 또한 샤리아에 대해 세계적 권위자인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샤리아자문위원회 의장 ‘모하메드 다우드 바커’ 박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대우증권은 2007년 말레이시아 CIMB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면서 수쿱발행을 추진하였고 비금융기업들 중에는 한국석유공사나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공기업위주로 이슬람금융을 활용한 자금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¹³³⁾

132) 최원근·안성학·최현우, 「이슬람금융현황」, 하나금융정보 제52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04.20, 16면

133) 김정렬, 「한국과 일본의 이슬람금융 도입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4권 제2호, 2011.04, 1237면

<표 8> 우리나라 이슬람금융 도입 현황¹³⁴⁾

기업명	내용
신한금융투자	-말레이시아 KIBB증권과 제휴를 맺고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라, 수쿱 발행 추진
대우증권	-말레이시아 CIMB은행과 제휴를 맺고 직원을 파견하여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준비
우리투자증권	-2010년 카타르이슬람은행과 전략적 제휴 체결 -UAE의 아부다비 사무소 설립 추진
한국투자증권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이슬람금융팀 운영 -말레이시아 Berjaya Land Berhad와 제휴. -이슬람금융전문가인 모하메드 바커박사의 자문을 받으며 수쿱 발행 준비
산업은행	-주채무계열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마련을 중동지역에서 PEF추진
샤리아 파이낸스	-INCEIF와 경희대학교 간에 이슬람금융교육 MOU 체결 -말레이시아 아마니와 업무 제휴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수쿱이 발행된 사례는 없다. 국내에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시도한 사례 중 KTB투자증권의 경우 싱가포르에 지점을 둔 쿠웨이트 파이낸스 하우스(KFH)와 공동으로 이슬람금융이 출자한 사모펀드를 추진하였다. KTB는 자금동원 능력이 크고 국내업체간에 자본유치 경쟁이 덜한 새로운 파트너를 필요로 했고 KFH는 산업투자에 관심이 많았다. 두 회사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펀드를 설계하였고 이후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신성장동력펀드의 운용사 모집경쟁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해외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모집마감이 연기되면서 더불어 KFH싱가포르 지사의 내부 악재와 겹쳐 결국 KFH싱가포르 지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컨소시엄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¹³⁵⁾ 물론 이 사례는 펀드가 성사되지 못했지만 이후 이

134) 김보영, 「국내금융회사의 이슬람금융 도입 준비 현황」, 자본시장 weekly 25호, 자본시장연구원, 2008 ; 김종원, 각주 25의 책, 248면 ; 김정렬, 앞의 논문, 1237면

135) 홍성민·김종원·홍순재·이선호, 앞의 책, 288면

슬람자금을 유치하려는 기업들에게 교훈을 주었다. 이슬람금융기관들의 관심투자분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과 정부가 자금을 공동출자하는 방식¹³⁶⁾은 투자를 유치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점이다.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부의 공동출자방식은 거래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이슬람금융의 도입초반에 활용하기에 좋을 것으로 보인다. KFH사례 이후에 비금융기업 중에서 공기업 위주로 이슬람자본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이슬람금융기관 쪽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공기업을 선호하므로 이것이 성공한다면 2차적으로 우량 민간기업의 자금유치가 수월해 질 것이다. 현재 이슬람자금의 유치를 검토 중이거나 준비 중인 공기업으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있다.¹³⁷⁾

주식회사 동화홀딩스의 경우 처음으로 이슬람금융을 이용하여 국내기업에 자금조달을 성공한 케이스이다. 물론 수쿱의 발행이 아닌 론(Loan)에 가까운 방식이지만 무라바하형식을 그대로 따른 방식이었다. 동화홀딩스의 말레이시아 소재 계열사인 동화GH인터내셔널은 지난달 현지에서 무라바하파이낸스 방식으로 2400만 달러를 현지 금융회사들로부터 조달했다. 동화홀딩스는 원래 국내자금조달을 검토하였으나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이슬람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조달비용이 낮아 이를 선택하였다.¹³⁸⁾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계열사의 현지화에 중요하다는 측면도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의 경우 국내 최초로 이슬람금융 방식을 이용하여 자금조달이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136) KFH사례에서는 운용사를 모집할 때 정부가 약 1000억원 가량을 출자하고 운용사가 추가로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모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이었다.

137) 최원근·안성학·최현우, 「이슬람금융현황」, 하나금융정보 제52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04.20, 16면

138) ‘이슬람 금융으로 국내기업 첫 자금 조달 성공. 동화홀딩스 2400만弗’, 한국경제, 2010. 5. 13일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51329101>

제2절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주요 쟁점

I. 서

수쿱은 현재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세금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현행 조세법상 수쿱을 발행할 경우에 다른 해외채권보다 4%나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가능성이 실질적으로 희박하다. 이러한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이자라 수쿱과 무라바하 수쿱에 대해 이중과세의 부당함을 제거하여 일반채권과 동일한 수혜를 적용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주요 쟁점인 과세법적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고찰해보겠다. 또한 일부에서는 동개정안의 내용이 이슬람금융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슬람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실체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슬람채권의 수익에 대한 실질적 성격에 관하여 논의해보겠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이슬람채권 중에 이자라 수쿱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증권과 구조가 유사하다. 이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자라 수쿱의 도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해보겠다.

II.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이자라 수쿱

이자라 수쿱은 리스 또는 임대이용료를 자금운용수익의 원천으로 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샤리아에서 이자수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라 수쿱 발행 시에도 실물을 동반한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익금의 형태로 지급한다. 2009년 9월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권리관계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외화 표시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이 제4호 가목에 따라 발행법인에 지급하는 임대료를 이자로 보고, 이를 지급받는 발행법인에 대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며, 발행법인이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자산 임대용역과 제1호에 따른 조달법인의 자산의 매도 및 제2호에 따른 발행법인의 자산의 재매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안에서는 이자라 수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외화표시채권과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내국법인이 특수목적회사인 SPV에 지급하는 리스료를 이자로 간주하여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내국법인에 손비처리 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기초자산을 매매하거나 재매매할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세나 취득·등록세 또는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현행법상으로 이자라 수쿱을 발행하게 되면 차입자가 SPV에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 법인세가 발생하고 이후 SPV가 차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수쿱을 발행하는 SPV가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리스료나 투자자가 SPV로부터 수취하는 리스료 등에 대한 법인세가 발생하여 이중으로 과세가 부여된다.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SPV가 부동산을 차입자에게 재매각¹³⁹⁾할 때도 법인세와 취득세·부가가

139) 자산의 매각 및 재매각이란 sales & lease back 이라고 불리며 조달법인이 보유자산을 SPV에 임대한 뒤 SPV로부터 다시 임대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자라 구조에서 자산

치세가 부과된다.

2. 무라바하 수쿱

무라바하 수쿱은 발행자와 투자자간에 실물자산의 매매로 발생하는 차익을 이용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라바하 수쿱에 대해 “내국법인이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권리관계에 따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상대로 외화표시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이 제4호에 따라 발행법인에 지급하는 전매대금 중 발행법인의 매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로 보고, 이를 지급받는 발행법인에 대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며, 제1호에 따른 발행법인의 자산의 매도 및 제3호에 따른 조달법인의 자산의 매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위 개정안에서는 내국법인이 SPV에 지급하는 전매차익을 이자로 간주함으로써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내국법인에 손비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국법인이나 SPV가 기초자산을 차입자나 외부상품매입자에게 매매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무라바하 수쿱에서 발생하는 전매차익을 이자로 보고 면세혜택을 적용하여 일반외화채권과 동일한 취급을 하기 위함이다.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보완책으로 나온 상품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국유재산의 해와 매각 금지’에 따라 수쿱을 통한 정부채 발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 후 재임대 방식을 이용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채권발행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샤리아에도 위반되지 않아 중동이나 말레이시아 등 주요 이슬람금융국가들에서 이용하는 상품이다. 홍성민, 앞의 책, 293면

현행법상 무라바하 수쿱을 발행한다면 수쿱을 발행하는 SPV가 차입자인 내국법인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 SPV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SPV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내국법인이 이를 외부에 다시 판매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어 이중으로 과세가 부여된다.

3. 소결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나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채권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슬람채권을 발행하면서 기초자산이 이전될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금부담은 국내기업들이 이슬람자금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수쿱발행시 발생하는 임대료 등에 대한 법인세나 자산매도 및 재매도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을 이자로 보고 면세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법상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된다면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되어 실용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개정안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분산 시킬 수 있고 이슬람금융자본의 유입으로 투자자가 늘어나 전체적인 투자의 폭이 확대되어 국내기업의 차입여건이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의 “내국법인이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종교상의 제약을 지키면서”의 표현은 특정종교의 교리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치 못하다고 하였다.¹⁴⁰⁾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 의견 중에 종교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경제논리를 논의함에 있어서 경제문제와 종교문제는 분리시켜 논의해야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슬람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분위기와 일부종교가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슬람금융도입의 원활함을 위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의견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이슬람채권의 조세법적 문제

1. 서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공평하게 세법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최대원칙으로서¹⁴¹⁾ 법적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를 보다 구체화한 원칙이다.

이자가 금지된 이슬람채권은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대료나 매매차익 등을 통한 수익으로 이루어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은 외형상 나타나는 명칭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세법상의 이자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N경제사회위원회 산하 ‘UN조세전문가위원회’가 2007년도 제3차 연차총회 회의와 2008년 제4차 연차총회 회의에서 수쿱은 그 본질이 명백하게 대출(loan)에 해당하고 이 원리로 금융계약에 기반을 둔 수익은 이자로서 간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¹⁴²⁾ 수쿱발행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이 어떠한 명칭을

14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11, 38면

141)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

가지더라도 그 본질을 이자로 인정하면 이어서 발생하는 이슬람채권의 과세 문제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외화표시채권 해당 여부

(1) 서

이자의 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채권의 특징에 따라 이를 일반적인 외화표시채권과 동일하게 비과세적용을 할 수 있느냐의 의문이 발생한다. 외화표시채권이란 정부나 은행 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으로 정부가 발행한 외평채, 산업은행과 장기신용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민간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있다. 외화표시채권은 정부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발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이 높고 이자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외화표시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¹⁴³⁾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있다. 수쿱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쿱과 일반채권의 성격을 비교해보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슬람채권을 실질적으로 외화표시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수쿱과 회사채의 차이점¹⁴⁴⁾

수쿱과 회사채의 차이를 보면 우선 외형상 형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142) 최두열, 「이슬람채권법안 도입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KERI Insight 11-05, 6면

143)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참조

144) 최재건·서희열, 「이슬람채권의 도입방안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세무학회, 2011.09, 294~295면; 최재건, 「이슬람채권의 도입과 세무상 처리에 관한 연구-수쿱무라바하 이윤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세무학과 박사논문, 2010, 151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수쿠티는 실물거래를 동반해야 하지만 회사채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회사채는 채권발행자가 채권보유자에게 일정계약기간동안 채무를 지게 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쿠티의 경우에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금융거래이므로 이자 대신 이익으로 형식상 표시가 이루어진다. 회사채는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등의 회사채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지만 수쿠티는 자금을 대여하는 입장의 의사에 따라 평가기관이 다르다. 또한 회사채는 법정한도액의 제한이 있고 수쿠티는 자금 대여자와 발행하는 내국법인 사이에 한도를 협의할 수 있다. 회사채는 주식회사에서만 발행될 수 있으며 수쿠티는 수쿠티발행 가능기관에 대해 국내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수쿠티와 회사채의 유사점¹⁴⁵⁾

회사채의 경우 수익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수쿠티의 경우도 사전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이 정해져 있다. 회사채나 수쿠티 모두 이를 발행할 경우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받고 유동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수쿠티가 아직 회사채만큼이나 활성화되지는 않았으므로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회사채와 수쿠티 모두 거액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장기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시장금리를 감안하여 이율을 측정한다. 수쿠티의 경우 장·단기 모두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장기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회사채와 수쿠티는 원리금의 상환기관도 정해져 있으며 원금은 장기차입금, 이자는

145) 각주 145과 동일

지급이자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한다. 회사채의 경우에는 자본수익을 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쿱은 샤리아에 따라 수익의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수쿱의 수익은 사실상 이자로 이해함이 옳다.

(3) 소결

이렇듯 사채와 수쿱은 일부 외형상의 차이점이 있지만 실질적 내용이 거의 유사한 형태의 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역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내국법인이 해외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수쿱을 발행하더라도 내국법인 발행의 외화표시채권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¹⁴⁶⁾ 그러므로 이슬람채권은 현행법상 채권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고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면세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슬람채권을 역차별하게 되며 이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취·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

(1) 서

이슬람채권 발행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문제를 논의하려면 우선 신탁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신탁법

146)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없어도 유권해석만으로 이슬람채권에 대해 타 외화채권과 동일한 비과세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무라바하 수쿱의 경우, 자금유통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상품을 매개시키고 실질적 내용은 채권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정부가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관례나 행정해석으로 유권 해석(예규)을 내린다면 수쿱의 이윤 상당액에 원천징수를 면제하는데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도 이슬람금융 관련 세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원과 국세청이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경제적 실체를 반영하고 있어 유권해석하고 있다. 최재건, 앞의 논문, 144-149면

제1조에 따르면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와 특별한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즉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타인에게 맡기는 행위이며 당사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로 구분된다. 위탁자란 신탁목적의 설정자이며 신탁행위의 당사자이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역할을 한다. 수익자는 이러한 신탁행위에 기인한 신탁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영미법상의 신탁제도에서는 형평법¹⁴⁷⁾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되어 보통법상의 소유권과 형평법상의 소유권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소유권의 이원화 구조는 권리관계를 구별하여 수탁자가 법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수익자는 재산의 형평법상 소유권을 가진다고 본다.¹⁴⁸⁾ 이는 신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법률적 관점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영미법상의 소유자 분리구조는 이슬람채권의 조세문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신탁법에서는 신탁에서 발생한 모든 경제적인 이익을 신탁이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시켜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¹⁴⁹⁾ 이러한 구조에서는 소유권의 이원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영미법상의 형평법을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영미법상의

147) 형평법이란 보통법(common law)을 적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구제하기 위해 발전된 법 체계로 새로운 법 논리를 추가하여 보통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상황에 따라 형평법이 보통법보다 우위에 서는 경우도 있지만 결코 보통법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영미법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권리가 중첩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 법률관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서문식, 「미국의 신탁법리 -우리나라와 신탁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5권 제1호, 2008, 31면

148)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다가 소유권이 이원화되면 수익자에게 충실의무, 주의 의무, 재위임 금지의무, 공평의무, 정보공개의무, 설명·기록의무 등과 같은 신인의무(fiduciary duty)가 주어진다. 서문식, 앞의 논문, 35면

149) 소득세법 제2조의2 참조

신탁구조와 유사한 제도로서 관습법과 판례상으로 발달한 명의신탁제도¹⁵⁰⁾가 있다. 명의신탁제도란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 등 제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2) 소유권 이원화 방식과 이슬람채권의 취·등록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

영미법상의 신탁제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소유권을 신탁의 설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명목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고 수익적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있어 소유권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소유권 이원화 방식에서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기초자산을 SPV로 이전시키고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명목상)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 중 수익적 소유권만을 SPV로 이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명목상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취·등록세 및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샤리아 학자들도 이러한 소유권 분리방식에 대하여 이슬람율법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¹⁵¹⁾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속 발행시 명목상의 소유권도 같이 이전되기 때문에 취득세·등록세·부가가치세 등이 기초자산이 재이전되는 과정에서 다시 부과되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대륙법계 국가들이 이슬람금융을 도입할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슬람금융의 활발

150) 명의신탁은 당사자가 자백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않는 한 범법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탈세, 재산은폐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등기할 때 실질 소유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 실질주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http://dic.mk.co.kr/cp/pop/desc.php>

151) 최두열, 앞의 논문, 10면

한 도입을 위해 현행 신탁제도가 소유권을 구분하여 해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국가 간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신탁제도의 차이로 인해 조세중립성과 이용자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¹⁵²⁾ 주요 국가의 신탁제도가 우리나라와 차이가 나는 점을 볼 때 오랫동안 개정되지 못한 신탁제도도 국제자본시장의 여건이 많이 변화한 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4. 자산유동화증권과 이슬람채권

(1)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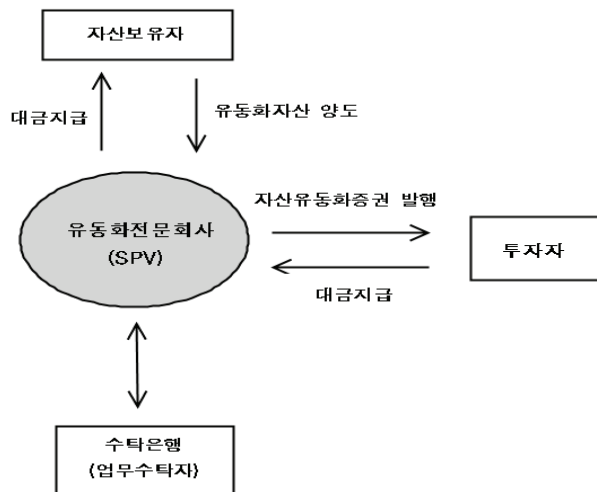
정부는 이자라 수쿱과 무라바하 수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이슬람금융상품보다 위의 두 가지 채권을 먼저 국내 자본시장에서 발행할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자라 수쿱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과 매우 비슷한 구조임을 이유로 굳이 수쿱을 들여와 채권을 발행한다는 점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자라 수쿱과 자산유동화증권은 특정기계나 건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채권을 발행하므로 그 구조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살펴보고 수쿱도입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조세문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다.

(2) 자산유동화제도

자산유동화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현금화한다는 의미이다. 비유동적인 자

152) 김종해, 앞의 논문, 162면

산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이나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한 뒤에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¹⁵³⁾으로 아래의 그림5의 구조와 같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는 자산유동화를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나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회수대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그림 5>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구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유동화제도가 1989년 9월에 도입되었다. 도입초기에는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에 급증한 부실채권을 처리하기위한 수단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의 주요 자금수단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부동산 개발사업의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

153) 서미영, 윤성수, 「유동화전문회사의 과세제도의 실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세무학 연구 제23권 제1호, 2006.03, 11면

으로 이용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발행방식이 증가하였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시에도 자산유동화증권을 이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¹⁵⁴⁾ 이렇듯 자산유동화거래는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올 때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부실채권 물량이 줄어들고 유동화에서 부실채권 비율은 대폭 축소되었다. 이후 유동화 대상자산은 대출채권, 매출채권, 신용카드채권 등의 정상적인 채권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¹⁵⁵⁾

(3) 자산유동화증권과 이자라 수륙

자산유동화증권과 이자라 수륙의 거래방식이 외형상 매우 비슷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여러 차이점을 보인다. 세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자산유동화제도는 자산소유권에 대해 ‘바이 백 옵션(Buy back option)’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¹⁵⁶⁾ 바이 백 옵션이란 특정기업을 인수하고 이후 매각할 경우에 우선매수청구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해주는 것으로 매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¹⁵⁷⁾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을 매입한뒤 일정기간 후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매도자가 매입자의 부동산을 다시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수륙의 경우는 채권이 만기에 도래하면 반드시 채권발행자가 기초자산을 재매입하여야 한다. 재매입가격 또한 SPV에 양도되었던 가격과 동일하여야 하는데¹⁵⁸⁾ 이는 만기시 안정적으로 원금상환을 하기 위해서이다. 반면에 자산유

154) 국회입법조사처,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 I, 224-225면

155) 박해선, 「자산유동화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32면

156) 홍성민·김종원·홍순재·이선호, 앞의 책, 180면

157) 스톡오븐, <http://www.stockoven.com>

158) 이슬람율법에서는 화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거나 하락하는 시간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

동화증권의 경우 재매입가격이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리스크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 자산유동화제도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SPV)설립을 리스이용자나 투자자 모두 가능하다¹⁵⁹⁾. 그러나 수쿱의 경우는 채권발행자(SPV)가 지분을 모두 소유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수쿱을 발행하는 발행주체의 책임이 무거워져서 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슬람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국제샤리아감독기관이 정한 가이드에 따라 관리·감독받는다. 더불어 해당 금융기관 내에도 샤리아위원회 등의 내부감독기관의 감시와 가이드에 따라야만 수쿱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쿱을 발행하는 기관은 지분도 모두 소유하면서 동시에 엄격한 관리·감시를 받고 있으므로 발행기관이 적지 않은 책임을 지고 증권발행사업을 운용할 수밖에 없다. 즉 이슬람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은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높은 신용도를 가진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이는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조달기업 또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해당 거래가 끝난 뒤에도 모든 당사자들이 안정적인 자금이동방식으로 거래를 청산할 수 있다. 셋째, 채권발행시 기초자산의 범위가 다르다. 자산유동화제도의 기초자산은 부동산을 포함한 자동차나 담보채권 등의 각종 유·무형 자산을 포함한다.¹⁶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동화자산을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수쿱은 샤리아에 따라 부동산 또는 유형자산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도록 허용한다. 채권 등의 무형자산은 이자를 허용하거나 실물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샤리아에 위반되어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

에 반드시 재매입가는 양도가격과 동일해야한다.

159) 홍성민·김종원·홍순재·이선호, 앞의 책, 180면

160) 강성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의 상법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4면

(4) 자산유동화증권과 과세혜택

이슬람금융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슬람채권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부분을 제거하여 일반채권과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자라 수쿱과 거래 구조가 유사한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에 조세법상 어떠한 과세혜택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수쿱의 조세문제에 대하여 논의해보겠다.¹⁶¹⁾

1) 법인세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출자자가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다시 부과할 경우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¹⁶²⁾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유동화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도록 하였다.¹⁶³⁾ 이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조달기업에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세워진 일시적 특수목적회사라는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즉 명목회사에게 과세혜택을 주어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 부가가치세

유동화전문회사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고¹⁶⁴⁾ 부가가치세법이 과세되지 않는 면세혜택을 받는다.

161) 현행법상 자산유동화제도와 관련된 과세혜택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비교할 수 있는 부분만 논의하였다.

162) 서미영·윤성수, 앞의 논문, 12면

163) 법인세법 제51조의 2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15호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금융과 보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이들 용역이 부가가치창출의 투입요소가 아니라 부가가치의 구성요소로 보기 때문이다.¹⁶⁵⁾

3) 취득세와 등록세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자산에 대해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발생한다.¹⁶⁶⁾ 자산유동화증권의 등록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119조 제1항 3호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으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를 보면 동법 제 120조 제1항 9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자산유동화제도의 문제점

16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

165) 신순철,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타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8면

166) 오문성, 「특수목적법인(SPC)의 법적 구조와 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68면

자산유동화증권의 구조가 일반증권발행 방식과 다르므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상해 보면 우선 기초자산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SPV가 채권을 발행할 경우에 실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와 절연된 상태에서 채권이 발행된다. 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시킴으로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구조화하였기 때문이다.¹⁶⁷⁾ 자산유동화증권의 증권발행한도는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액 총액이다.¹⁶⁸⁾ 이는 유동화자산이 과대평가 될 경우 투자자의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 그러나 수쿱발행기관은 샬리아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내·외부적으로 전문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므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로 인해 수쿱을 발행하고 지분 또한 모두 소유해야하는 수쿱발행기관의 책임의식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기초자산평가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이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산유동화는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초자산의 위험정도에 따라 선·후순위채로 구분하여 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기관의 감독규율체계가 미흡하여 투명하지 못한 유동화과정으로 오히려 위험의 집중화가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아직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 유통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미비한 까닭에 자산유동화제도 도입의 본질이 퇴색할 경우 투자자들이 더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¹⁶⁹⁾

167) 유상열·윤재원,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과세문제」, 세무와 회계저널 제5권 제1호, 2004, 156면

168) 자산유동화의 법률 제33조 참조

169)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 I, 226면

(6) 소결

이렇듯 자산유동화증권과 이자라 수쿱은 외형상 보이는 구조와 다르게 실질적으로 자산소유권, 기초자산의 매매입가격, SPV의 설립주체, 기초자산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자산유동화증권은 이자라 수쿱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자라 수쿱은 샤리아에 근거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무슬림자본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거래방식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산유동화제도는 현행법상 일부 과세혜택을 받고 있다. 법인세에서 배당소득공제를 활용하여 리스료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적용받고 부가가치세에 대해 면세를 받으며 기초자산의 양도 및 매매입 시에 취득·등록세를 50% 감면 받는다.¹⁷⁰⁾ 이러한 자산유동화제도의 과세혜택을 이슬람채권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앞의 두 거래방식은 기초자산을 SPV에 매각하고 그 자산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여 증권화 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하나의 거래방식은 일부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나머지 거래방식은 현행법상 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중과세가 부과되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수쿱에 과세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차별받는 부분을 제거하고 동등한 취급을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채권에게 과세혜택을 준다’라는 논의로 동개정안 통과가 계류되고 있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

170) 다만 현재 자산유동화제도의 과세혜택에 대해 개선할 점이 많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을 더욱 늘리기 위해 현재 과세혜택의 범위를 더욱 넓히려는 의견이다.

제3절 이슬람채권의 조세문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이슬람금융제도를 도입한 주요 국가들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기존의 전통금융제도와 과세형평성에 대한 문제였다. 이슬람금융의 발전수준이 높은 영국,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 체계인 프랑스가 이슬람금융을 도입하면서 조세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하였는지 논의해보겠다.

I. 영국

영국은 비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이슬람금융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영국은 이슬람금융도 금융의 한 분야로 보고 있으므로 이슬람금융에 대한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금융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는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e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이 이슬람금융에도 적용된다. 영국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기관들에 어떠한 특혜도, 차별도 없이 동등한 법률적 기반을 제공한다’라고 천명하고 이슬람금융에 대해서도 이 기본원칙을 적용하였다.¹⁷¹⁾ 영국은 기존의 금융상품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이슬람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에 따라 이슬람금융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영국 금융통화청은 이슬람금융에 대한 장애는 배제하되 특별한 대우는 없도록 이슬람금융 진흥책을 실시하였다.¹⁷²⁾ 가장 먼저 이슬람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인해 일반 금융거래보다 불리해지는 결과가 없도록 함을 기본으로 하고 2003년 금융법을 제정하여 무라바하와 이자라 수쿱에 대해 토지거래의

171) 최두열, 앞의 논문, 9면

172) 한정환, 앞의 논문, 31면

토지인지세와 이중과세를 철폐하였다. 2005년에는 무라바하와 무다라바 방식으로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수익에 대해 기존 일반금융에서의 이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2006년에는 무샤라카 거래에도 동일한 조치가 확대되었으며 이슬람금융 거래시 이자에 해당하는 ‘배당’에 대한 취급이 불명확함으로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배당’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2007년까지 전반적으로 이슬람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통금융에서의 이자와 동일하게 보도록 규정하고 세금경감효과를 부여하였다. 이로 인해 이슬람채권의 발행을 위한 실물자산을 매각·재매각할 경우에 발생하는 토지인지세나 자본이득세 등이 면제되었다.¹⁷³⁾

물론 영국은 유연성 있는 신탁제도가 바탕이 되어있으므로 이슬람금융제도를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기존 법리와 크게 충돌하는 부분이 없었다. 관련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이슬람금융을 도입함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단계별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리스방식을 이용한 이슬람금융 거래시 전통금융의 시각으로는 두 개의 자산이 거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중과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하나의 거래로 취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이슬람금융의 수익은 형식적으로 ‘이자’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더라도 실질적인 성격은 전통금융거래의 ‘이자’와 같으므로 이와 동일한 세금혜택을 받게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이슬람채권의 거래시에 발생하는 이윤상당액을 실질적인 이자로 보고 이에 대해 비과세조치한다는 점과 같다. 영국은 이슬람금융이 전통금융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법제도를 정비하여 이슬람금융의 활용성을 높인 뒤에 이후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제도를 점차 정비해나갔다. 우리나라 또한

173) 박성진, 「이슬람채권에 대한 조세감면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회계연구 제16권 제13호, 2011.09, 167면 ; 한정환, 앞의 논문, 32면

영국과 마찬가지로 전통금융과 차별받는 가장 큰 부분인 이중과세문제부터 정비하여 이슬람금융을 활성화 시키고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II.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수쿱발행률은 수쿱시장에서 최대 규모이다. 이처럼 이슬람 금융이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국가들이 전통금융과 이슬람금융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과 다르게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슬람금융을 우대하여 여러 특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슬람금융을 도입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에 이슬람은행법을 제정하여 최초의 이슬람은행인 Bank Islam Malaysia Berhad를 설립하였다. 이후 2001년 정부의 자본시장 마스터플랜에 맞추어 수쿱시장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수쿱을 발행하는 비용을 공제하고 이슬람금융상품에 대한 인지세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SPV와 관련된 소득세면제 등의 우대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말레이시아의 통화인 링깃화 이외의 통화로 발행된 수쿱에 대해서도 원천과세 의무를 면제하였다.¹⁷⁴⁾ 2006년부터 이슬람금융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이슬람은행과 이슬람보험업자들에 대하여 외화거래가 허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외기업들도 국내시장에서 외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07년부터는 이슬람은행과 이슬람보험회사에 대해 소득세를 면세 조치하는 방안을 10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¹⁷⁵⁾ 말레이시아도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슬람금융거래에서의 수익을 소득세법상 이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고객과 이슬람은행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174) 한정환, 앞의 논문, 26면

175) 한동훈·이원삼·안수현, 앞의 논문, 151면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하도록 양도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등의 과세 제도를 정비하였다.¹⁷⁶⁾

이슬람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회적 관심이 적은 우리나라에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에 대한 세제우대정책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현재에도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이슬람금융에게 특별한 과세혜택을 부여한다고 잘못 이해되고 있어서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처럼 이슬람금융을 실제로 우대조치 하는 것은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무슬림국가이고 샤리아를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슬람금융에 대한 우대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슬람금융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끌어와 현재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금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즉 전통금융거래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슬람금융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통금융에 비해 차별받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이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다양한 종류의 이슬람채권이 발행 되고나면 이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점차 개선하여 단계별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말레이시아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슬람금융 거래시 발생하는 이익을 이자로 분류하고, 부동산을 매입·재매입 하면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면제하는 점 등은 영국의 사례와 같은 맥락으로 참고하면 될 것이다.

Ⅲ. 프랑스

영국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영미법계는 이슬람금융을 유연하게 받아들여

176) 최재건·서희열, 앞의 논문, 284면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시켜 나갈 수 있었다. 반면에 대륙법계인 프랑스는 이슬람금융의 도입초기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련제도를 단계별로 정비하며 이슬람금융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늦은 2010년에 일부 이슬람금융상품에 대한 세무상 처리 지침을 발효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수쿱발행의 결과로 배분된 보상금을 이자로 취급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였다. 무라바하 거래 시에 발생하는 금융소득 또한 일상적인 금융거래방식에서 수취되는 이자와 동일하게 보았으며 이는 이자라 거래시 발생하는 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¹⁷⁷⁾

프랑스의 경우도 다른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이슬람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자로 규정하도록 명시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였다. 이슬람금융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은 법체계와 상관없이 이슬람금융의 수익이 외형과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전통금융의 이자와 동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도 이슬람금융의 수익을 이자로 취급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프랑스가 이슬람채권의 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영미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 피디시(Fiducie)개념을 법체계에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다.¹⁷⁸⁾ 피디시는 양도담보의 일종으로 투자를 위한 금전신탁을 의미한다. 대륙법체계는 소유권 분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금융을 도입할 때 이중과세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기존제도를 수정하여 영미법상의 신탁개념을 적용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논의했듯이 우리나라의 신탁법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프랑스가 앞으로 피디시개념을 기존 법체계에 어떻게 도입하는지 자세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177) 박성진, 앞의 논문, 167면

178) 최두열, 앞의 논문, 11면

제4절 이슬람금융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육성

I. 서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기관은 반드시 내부에 이를 관리·감독할 샤리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애널리스트들과 별개로 샤리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이슬람법과 금융, 두 분야에 전문적인 학자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현재 이슬람금융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는 자들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급증하는 이슬람금융의 수요에 발맞추기에는 어렵다. 우리나라 또한 우리법과 이슬람법에 능통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이슬람금융을 도입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이 시급하다. 이들이 샤리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뿐더러 국내법과 상충되는 이슬람법의 문제에 대해 중재제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9에서처럼 현재 바레인과 말레이시아, 영국 등에 이슬람금융법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이 있다. 영국의 SII와 말레이시아의 INCEIF, IBFIM의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통과하면 이슬람금융전문가 자격증이 주어지며 싱가포르의 PERGAS의 교육프로그램과정을 이수할 경우 샤리아어드바이저 자격이 주어진다.

<표 9> 이슬람금융 교육기관

국 가	기 관
말레이시아 ¹⁷⁹⁾	-이슬람금융연수원(IBFIM) -이슬람금융 국제 교육센터(INCEIF)
영국	-이슬람은행 보험연구소(IIBI) -증권·투자연구소(SII) ¹⁸⁰⁾
싱가포르	-PERGAS ¹⁸¹⁾ (Persatuan Ulama, & Guru-Guru-Agama Islam Singapura)
일본	-와세다대학 대학원
바레인	-이슬람금융 연구센터

II. 샤리아어드바이저와 샤리아위원회

이슬람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해당거래가 샤리아에 적합한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샤리아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샤리아어드바이저라고 부르며 샤리아학자들로 구성된 기구를 샤리아위원회라 한다.

샤리아어드바이저의 경우 사업이나 상거래시 샤리아에 적합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언하며 계약서나 신고서부터 계약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본적인 요소를 지도한다. 샤리아위원회는 해당거래나 수속 등이 샤리아에 적격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최종 판단하는 곳으로 샤리아보드라고도 불린다. 샤리아위원회는 이슬람금융을 취급하는 기관마다 설치되어 있

179)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연수원(IBFIM)은 실무 경험이 가진 금융전문가를 위한 교육과정이고 이슬람금융 국제 교육센터(INCEIF)은 일반인을 상대로 진행되는 석·박사 교육과정이다.

180) SII는 2006년 최초로 이슬람금융 자격증제도(Islamic Finance Qualification)를 도입하였고 이미 3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이 자격증을 채택하고 있다. 최원근·안성학·최현우, 앞의 논문, 14면

181) PERGAS란 싱가포르의 샤리아학자 단체로서 '샤리아어드바이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미야자키 데즈야·김종원, 앞의 책, 180면

으며 이슬람금융을 통한 자금의 용도가 샤리아에 적합하도록 지도하고 관리·감독하므로 사실상 샤리아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해당거래를 할 수 있다.¹⁸²⁾ 샤리아위원회는 샤리아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거래당사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투기적 요소와 금융사고의 원인을 내제하고 있는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러한 이유로 샤리아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금융상품은 지나친 투기요소들이 배제된 거래임을 전제로 하게 된다.

Ⅲ. HSBC Amanah사의 사례

이슬람금융을 취급하는 글로벌 금융기관들 중에 HSBC사(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의 ‘HSBC Amanah¹⁸³⁾’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⁸⁴⁾ HSBC Amanah는 무슬림고객들이 종교적 신념을 유지하면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HSBC의 별도브랜드이며 개인과 기업에게 전통금융과 같은 전반적인 금융서비스를 샤리아를 위반하지 않은 형태로 제공한다. ‘HSBC Amanah’는 유로머니(Euromoney)¹⁸⁵⁾社로부터 이슬람금융부문에서 최고 국제 이슬람금융기관으로 선정 되는 등 질 높은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⁸⁶⁾

182) 미야자키 데즈야·김종원, 앞의 책, 175~178면

183) Amanah란 신뢰, 정직, 성실의 의미이다.

184) 이후 기술한 HBSC Amanah의 사례는 HBSC Amanah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들을 요약하였다.
<http://www.hsbcamanah.com/amanah>

185) 유로머니사는 영국의 저명한 금융잡지로 글로벌경제에 대해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186) HBSC Amanah가 유로머니사로부터 수상한 내역을 살펴보면 ‘Best International Islamic Bank (2011), Best Sukuk House (2011), Best International Islamic Bank (2010), Best Sukuk House (2010), Best Islamic Fund Manager (2009), Best International Sukuk House (2009), Best Takaful Provider (2009), Best International Islamic Bank (2008), Best Islamic Fund Manager (2008), Best Sukuk Deal (2008), Best Debt House in Saudi Arabia (2008), Best International Islamic Bank (2007), Best Sukuk House (2007), Best Project Finance House (2007), Best Project Finance Deal (2007), Best Sukuk Deal (2007)’이 있다.
<http://www.hsbcamanah.com/amanah>

HSBC Amanah는 이슬람금융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육성에 큰 중점을 두었고 대표적인 것이 ‘Amanah Analyst programme’이다. 이는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직원들이 일정기간동안 은행과 자본시장, 샤리아, 자산서비스 등에 관하여 교육받는 애널리스트 커리큘럼이다. 이후 UAE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홍콩지점을 중심으로 이슬람금융실무에 투입되고 최소 두 번의 지점이동을 거치며 경험을 쌓은 뒤에 최종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배치가 된다. 해당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최소 2년이 소요된다.

또한 HSBC Amanah는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샤리아를 준수하기 위한 ‘HSBC Amanah 샤리아위원회’를 중앙샤리아위원회와 지역샤리아위원회로 구분하여 각 기관들이 긴밀하고 협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였다. 현재 HSBC Amanah의 중앙샤리아위원회에는 샤리아와 이슬람경제 및 세계경제, 이슬람금융산업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이슬람법학아카데미와 이슬람금융 국제기구 자문위원회 등의 출신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지역샤리아위원회도 위원회마다 3명에서 5명 정도의 이슬람금융과 이슬람법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HSBC Amanah의 모든 거래가 샤리아를 준수하는지를 고려하고 이것을 기업가치에 반영시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감시와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슬람금융이 일부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자 HSBC는 비무슬림을 포괄하는 영업전략을 펼치며 기존은행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샤리아를 준수하는 금융상품이 수익성과 안정성에서 전통금융상품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¹⁸⁷⁾ 전통금융방식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무

187) 이동훈, 「베일에 가려진 16억 무슬림 시장 공략법」,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영 노트 제79호, 2010.11.04, 9면

슬림과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은 비무슬림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

IV. 소결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HSBC사의 경우를 본보기로 하여 해당 금융기관 내에 이슬람금융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이슬람금융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만든다면 금융기관들은 이를 토대로 이슬람금융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이슬람금융과 이슬람법에 관한 전문가가 계속 배출되어야 한다. 이슬람금융창구에서 실무를 하는 직원의 교육부터 샤리아어드바이저나 샤리아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양성 프로그램까지 전반적인 교육과정도입이 필요하다. 우선 샤리아전문가를 초빙하여 샤리아와 이슬람금융제도에 대한 이론교육을 시행한 뒤에 해외이슬람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등의 연수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꾸준히 배출해내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글로벌 금융시장은 수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의 전통금융방식의 취약점을 인식하였다. 이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고 독특한 거래구조로 인해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지 않았던 이슬람금융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법이란 샤리아라고 불리는 성법을 의미하며 인간이 올바르게 살기 위한 방법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와 종교를 구분하여 생각하고 생활한다. 그러나 샤리아를 따르는 이슬람교도들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공존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비이슬람교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종교적 신념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고 경제와 종교가 공존하므로 종교신념을 거스르는 경제활동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도 이를 어길시 어김없이 처벌을 받는다. 이를 토대로 한 금융을 이슬람 금융이라고 하며 이것은 샤리아의 가르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금융과 관련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샤리아에서는 와지브(wajib), 만두브(mandub), 마크루브(makrub), 하람(haram), 무바브(mubah)의 다섯 가지 행동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모든 사회·경제·정치적 활동이 이루어진다. 샤리아에서는 리바(이자)를 금지하고 가라르(불확실성)와 마이사르(투기행위), 하람(포르노와 매춘, 돼지고기, 도박 등)을 금지하는데 이것은 금융거래에도 내제되어있다. 예를 들어 전통금융의 선물이나 옵션도 불확실한 것에 투자하기 때문에 샤리아에 부합하지 않으며 소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거액의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전통보험 또한 투기적 요소가 내제되어 있다고 보고 금지된다.

이슬람금융에 대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점은 어떻게 이자를 금지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슬람금융에서 가장 독특한 점이 전통금융에서의 이자의 개념인 리바를 금지하고 있는 점인데 샤리아에 따르면 이자는 자금과 시간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금융에서 자금거래형태로 고정이자를 받는다면 이슬람금융에서는 실물거래를 반드시 포함시켜 그 대가로 고정된 마진이나 변동성 있는 수익분배를 받는 방식이다. 여기서 마진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실물을 동반한 우회적인 거래를 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수익의 분배에 관한 그 실질적인 성격은 전통금융의 이자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거래 당시 자금이나 건물 또는 기계, 건설일 경우 원재료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식의 실물거래를 동반해야 하므로 지나치게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거래가 원천봉쇄된다. 이는 전통금융방식에서 나타났던 금융기관들과 사업주들의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슬람금융의 선진국인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보면 정부가 이슬람금융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며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전 세계 수쿱시장의 70% 가까이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 말레이시아는 가장 먼저 이슬람은행 설립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법률적인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사실상 인지세법이나 소득세법 등에서 이슬람금융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비이슬람권에서 이슬람금융이 가장 발달한 영국의 경우를 보면 먼저 이슬람금융이 전통금융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세제상 불이익을 제거하는 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그 외 이슬람금융도입에 필요한 자문단설립과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무슬림의 거주비율이 영국보다 높은 프랑스의 경우 일찍이 이슬람금융을 받아들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적문제와 더불어 대

륙법계의 특성상 유연성이 떨어져 이슬람금융제도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 국내법과 상충되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유연성있는 신탁제도를 도입하려는 등 이슬람금융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이 이슬람금융도입을 위해 법제도를 개선한 과정을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와 같이 대륙법체계인 프랑스가 이슬람금융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연구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로 2009년 기획재정부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한 수쿱도입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동개정안에는 무라바하 수쿱 거래시 발생하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 내국법인의 손비처리, 기초자산 매도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자라 수쿱 거래시 내국법인이 SPV에 지급하는 리스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내국법인의 손비처리, 기초자산 매매시 양도세와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자산을 매매하고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개정안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여 수쿱발행이 어려워지자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도입에 대한 기대치와 신용이 떨어지고 진행되던 관련 사업들의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슬람금융은 주요국가에 비하여 도입속도가 느린 상황이므로 국내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는 하루빨리 동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과 각종 금융기관들은 이슬람금융설명회와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이슬람금융도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면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이슬람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샤리아해석의 표준화

작업이 완성되지 않아 지역에 따라 거래가 가능한 이슬람금융상품의 종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샤리아전문가의 자문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기관은 이슬람법과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내부에 설치하여 개발된 이슬람금융상품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슬람금융거래시 발생하는 국내법과의 상충문제나 회계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슬람금융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므로 금융당국과 국외의 이슬람금융교육기관들의 자문을 받아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를 늦추는 또 하나의 이유인 일부종교상의 문제의 경우 종교와 경제를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종교논리를 내세워 이슬람자본의 국내유입에 반대하면서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이슬람금융도입을 위해서는 샤리아자문기구를 국내금융기업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데 이는 이슬람포교활동을 정부가 인가해 주는 것이라 주장한다. 둘째, 샤리아위원회의 설치로 인해 국내법보다 샤리아의 권위가 우선시 되고 이는 국내금융주권과 충돌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셋째, 이슬람금융의 자카트가 테러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이슬람금융도입으로 자금유출이 발생하여 국가 간의 종교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우리나라는 특정종교를 국교(state religion, 國敎)로 두지도 않고 있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고 있으므로 논리가 맞지 않다. 또한 샤리아위원회가 설치된다는 이유만으로 한 국가가 이슬람화 된다는 주장도 무리가 있다. 샤리아위원회는 종교포교를 목적으로 한 집단이 아니라 이슬람율법에 의한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자문·감시역할

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슬람금융이 전통금융과 확연하게 차이나는 부분이 샤리아에 입각한 금융거래만을 허락한다는 점이다. 이때에 샤리아위원회등과 같은 전문적인 자문기구 없이 이슬람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슬람투자자들로부터 이슬람금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샤리아위원회 등과 같은 이슬람금융자문기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즉 샤리아위원회의 설치는 이슬람금융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샤리아를 국내법보다 우선시 하기 위해 설치된 종교기구가 아니다. 그러므로 국내금융주권과 충돌할 것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 마지막으로 자카트가 테러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슬람율법학자인 바커 위원장¹⁸⁸⁾은 자카트는 국가에서 승인받은 정규기관이나 단체에만 전달되고 수쿱의 수익은 투자설명서 활용조항에 따라 정해진 용도 외에는 결코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고 강조하며 수쿱의 수익이 자카트라는 경로로 테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슬람 국가를 테러국가로 동일시하는 논리라고 하였다.¹⁸⁹⁾ 영국의 사례를 보면 테러단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이슬람금융제도를 활발하게 받아들였다. 또한 이슬람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유럽에 비하여 친숙하지 못한 미국도 이슬람금융을 큰 갈등 없이 도입하여 월드뱅크와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이슬람채권을 발행하고 있다.¹⁹⁰⁾ 샤리아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도록 하는 것은 순전히 샤리아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

188) 다우드 바커(Mohd. Daud Bakar)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샤리아(이슬람법)자문위원장으로 중동지역 유력 주간지 `미드(Meed)`에 의해 `5대 샤리아 율법학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샤리아자문위원장 외에 증권위원회 샤리아자문단, 라부안 금융감독청 샤리아감독협의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다. 민간기업인 모건스탠리, BNP파리바 등 투자은행(IB)의 수쿱 자문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한국투자증권과도 자문 계약을 맺었다.

189) 매일경제, '수쿱 테러자금 전용 불가능', 2011.02.28일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126981>

190) 조세일보, '윤증현 "이슬람채권 수익도 법인세 면제해야', 2010.02.18일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02/2010021897701.html>

일 뿐이며 기독교의 십일조 개념과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앞으로 수쿱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을 예상한다면 자카트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¹⁹¹⁾ 국제 이슬람금융 자문기관들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점차 자카트의 이동경로나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글로벌금융시장에서 이슬람금융의 신뢰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슬람금융을 받아들인 주요 국가들은 최소 10년에 걸쳐 이를 도입하였다. 전통금융과 접근방식이 다른만큼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법제도와 금융이라는 두 영역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시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일 것이다. 이후 이슬람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있는 우선 공기업위주로 이슬람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한 뒤에 점차 민간기업으로 넓혀나가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높은 인구증가율과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무슬림자본이 유입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및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해본다.

191) 임병화, 「이슬람채권법은 경제논리로 풀자」, 한국경제연구원, KERI Column, 2011.04.11, 3면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2012 스포캡 업계지도」, 어바웃어북, 2012

강성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상법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정책자료 I, 2011

금융감독원, ‘이슬람금융 한국설명회 결과’ 보도자료, 2009년 5월 6일

금융감독원, 한국금융감독원과 IFSB 공동 주최 이슬람금융 세미나 자료, 2009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범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09

김기수, 「금융회사와 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슬람금융」, 경기법학논총 제7호, 경기대법학연구소, 2008

김대영, 「무함마드 어록」, 경덕출판사, 2009

김보영, 「국내금융회사의 이슬람금융 도입 준비 현황」, 자본시장 weekly 25호, 자본시장연구원, 2008

김보영, 「또다시 지연된 한국의 이슬람금융 도입」, 자본시장 weekly 49호, 자본시장연구원, 2010

김보영, 「이슬람금융 특화 금융허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자본시장 weekly, 2008, 23호, 한국증권연구원, 2008.

김성필, 「신탁재산의 법률관계」, 민사법학 제17호, 1999

김정렬, 「한국과 일본의 이슬람금융 도입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4권 제2호, 2011

- 김종원, 「이슬람 금융의 힘」, 21세기북스, 2010
- 김종원, 「이슬람금융의 활용방안 및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미나자료, 2011
- 김중해, 「신탁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0
- 김중관, 「이슬람 경제 이론과 현실적 적용-무이자 금융제도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논의 제21-1호, 한국중동학회, 2000
- 남명수·곽용신, 「이슬람 금융의 발전사적 고찰과 우리의 대응전략」, 경영사학 제24집 제4호, 한국경영사학회, 2009
- 누카야 히데키, 박미옥 역, 「이슬람금융」, 살림비즈, 2009
- 명순구, 「이슬람의 이해」, <
<http://www.mindle.net/bbs/data/data01/article042.pdf> >
- 미야자키 테츠야, 김종원·송창규 역, 「이슬람금융이 다가온다」, 도서출판 물푸레, 2008
- 박성진, 「이슬람채권에 대한 조세감면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 회계연구 제16권 제13호, 2011
- 박종현, 「이슬람 경제의 새로운 메카 말레이시아」, 김&정, 2007
- 박해선, 「자산유동화제도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해식, 「이슬람채권시장의 현황과 전망」, 주간금융브리프, 제17권 제19호, 한국금융연구원(KIF), 2008
- 버나드루이스, 김호동 역, 「이슬람 1400년」, 까치글방, 2001
- 법제처, 「UAE(두바이) 외국인 투자법 및 금융 관련 법제 연구」, 2009
- 서문식, 「미국의 신탁법리-우리나라와 신탁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상

사법연구 제5권 제1호, 2008

서미영, 윤성수, 「유동화전문회사의 과세제도의 실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제23권 제1호, 2006

신순철,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타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4

심의섭, 「이슬람 금융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한국중동학회 제29권 3호, 2009

심의섭·김종도·김중관·이경희·홍성민, 「중동경제와 이슬람 금융」, 세창출판사,
2010

안성포, 「신탁의 기본구조와 그 법리」, 중앙법학 제9집 제2호, 2007

안재상, 「국제석유자본의 팽창과 활용방안」, 주간금융브리프 제16권 27호, 한
국금융연구원, 2007

양윤석,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의 규제방안」,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2

엘버트 후라니, 김미정·홍미정 역, 「아랍인의 역사」, 심산출판사, 2007

오문성, 「특수목적법인(SPC)의 법적 구조와 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2009

유상열·윤재원,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과세문제」, 세무와 회계저
널 제5권 제1호, 2004

유정석,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이슬람금융」, 글로벌 경제동향 속보, 삼성경
제연구원, 2008

의사국의안과 의안원문, ‘조세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2009

이근영, 「신탁법상 수익자의 신탁위반 처분행위 취소권」, 민사법학 제30호,
2005

이동훈, 「베일에 가려진 16억 무슬림 시장 공략법」, SERI경영노트 제79호, 삼

- 성경제연구소, 2010
- 이준호, 「이슬람금융의법적구조」, 아시아법제연구 제9호, 2008
- 이지연, 「이슬람금융 활성화 방안」, 주간금융브리프 제19권 12호, 한국금융연구원, 2010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보험연구원, 2009
- 일본손해보험사업종합연구소 손해보험협회편집실, 「이슬람보험(타카풀)에 대한 고찰」, 손해보험 제484호, 손해보험협회, 2009
- 임병화, 「이슬람채권법은 경제논리로 풀자」, 한국경제연구원, KERI Column, 2011
- 장건, 「세계금융위기에 동요되고 있는 GCC경제의 동향과 전망」,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19-3집, 한국이슬람학회, 2009
- 정영규, 「이슬람경제의 이해- 이란의 경제정책과 말레이시아 산업정책」, 연경문화사, 2008
-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 최두열, 「이슬람채권법안 도입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KERI Insight 11-05, 2011
- 최두열·오규택·박동규, 「이슬람채권의 구조」,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 18-1집, 한국이슬람학회, 2008
- 최영길, 「이슬람에서 거래와 관습 및 형벌」, 어학사, 1980
- 최원근·안성학·최현우, 「이슬람금융현황」, 하나금융정보 제52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
- 최재건, 「이슬람채권의 도입과 세무상 처리에 관한 연구-수쿿무라바하 이윤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0

최재건·서희열, 「이슬람채권의 도입방안 연구」,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제 28권 제3호, 2011

최태영, 「이슬람 보험에 관한 고찰」, 한국보험학회 학술세미나, 2008

패트릭 숙테오, (사)에드보캣코리아 역, 「샤리아 금융의 이해」2009

한동훈·이원삼·안수현, 「이슬람법이론 및 금융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9

한정한, 「이슬람 금융의 발전과정과 우리나라 이슬람 금융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홍성민, 「이슬람 경제와 금융」,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09

홍성민·김종원·홍순재·이선호, 「이슬람금융의 이해와 실무」, 한국금융연수원, 2010

2. 해외문헌

Ataul Huq Pramanik, 「Islamic Banking, How Far Have We Gone」,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 2006

Center Bank of Bahrai, *Annul Report*, 2008

Collet, Michel, Islamiv Finance New oppourtunities for France, Dubai, Dec., 15th.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Islamic Finance in UK: Regulation and Challenges」,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07

Joseph Schacht, 「An Introduction to Isla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Vogel, Frank and Samuel, 「Islamic Law and Financ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8

3. 인터넷자료

<http://article.joinsmsn.com>

<http://hosted.ap.org>

<http://likms.assembly.go.kr>

<http://news.donga.com>

<http://news.khan.co.kr>

<http://news.mk.co.kr>

<http://news.naver.com>

www.stockoven.com

www.aaofi.com

www.ajnews.co.kr

www.alislami.ae

www.bi.go.id

www.bnm.gov.my

www.cbb.gov.bh

www.dic.mk.co.kr

www.difc.ae

www.difc.ae

www.erasiae.co.kr

www.globalwindow.org

www.hankyung.com

www.hsbcamanah.com/amanah

www.ifsb.org

www.iifm.net

www.inceif.org

www.joseilbo.com

www.mifc.com

www.munhwa.com

www.oic-oci.org

www.quran.or.kr

www.wikipedia.org

ABSTRACT

A Legal Study on the Islamic Finance Introduction

Kim, Youngseo

(Under the academic supervision of Professor **Kim, Hanjong**)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world financial market has recognized the risk of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and started having interest on new types of deal. In addition, because of the rise in the price of oil, the movement of domestic capital markets of attraction have become active, the Islam financial market is developing. Islam financial market is the type of deal based on the Islam law Shari'ah. Islam financial market is following the standard of wajib, mandub, makub, haram, mubah, which financial products are dealt and developed. Islam financial market prohibits the interest called 'riba', and also prohibits uncertain contract, speculation and gambling act. Because of these reasons, the world is turning their eyes to the Islam financial market that the system is sanctioned by strict moral that prevents immoral acts that may be the reason of financial risk. England already had interest on Islam financial market and moved actively developing the Islam financial market, at the same time,

unfamiliar country like the US is also accepting Islam financial system. In the case of Japan, private corporations are attracting investment on Islam financial system. .

The population of Muslims is going over 25% of the world. The population of Muslim in Korea is also rising, but compared to Europe, the distribution is really low that there is a lack of professionals and social interest about it. Korea is looking forward with an effort of improving each basic Islam financial policies for the publication of Ijarah Sukuk and Murabaha Sukuk, but the amendment is not being able to pass because of administration, economy, and religion related factors.

For Korea's economy that is used to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Islam financial system may seem very unfamiliar. However, our country can activate the economy by including prudent oil money to the Korean economy, and decentralize the biased investment pattern to lessen risk in the capital market, which Islam financial system should be adopted as soon as possible. In this paper, discussion about basic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Islam financial system, improvement in policy from countries that adopt it, and our nation's adoption of Islam financial law and system is to be made.